

월 · 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 전자상거래와 조세 - OECD TAG 보고서 -

기획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폴란드의 조세개혁

정책연구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정책흐름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외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외

재정포럼

2001년 6월호(통권 제60호)

한국조세연구회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변명 / 김경 환
현안분석	6 36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 鄭在皓 전자상거래와 조세 - OECD TAG 보고서 - / 洪範教
기획	50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명언산책	67	부지런함과 검박함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68	폴란드의 조세개혁 / 박창 군
정책연구	80 83 87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 李明憲 · 鄭在皓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 孫元翼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 金正勳
경제단상	88 91	주식투자어떻게 할 것인가? / 이종철 월 소득 34만원? / 송은주
인물탐험	93	소설가 조정래 / 李 濬
정책흐름	98 103 105 108 109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중국의 외국인투자 동향 소득세 무기장신고자 관리강화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현황
재정통계	116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24	지자체 보조금 체계화 하라 외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변명

김 경 환 / 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미테랑은 “과거에프랑스를건설하는데 는 강하고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UN 인구 정주 위원회(UN Centre for Human Settlements)와 세계도시및지방정부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정부 세계헌장 (World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은 “모든공적인책무는시민들과가장가까운위치에 있는 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책무를 상위 정부에부여할때는기술적, 경제적으로효율성에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근접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에 기초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분권화와지방자치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중앙정부가행정과재정을통제해왔다. 지방자치가부활된지 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도입된 후 5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 측면의 지방자치에 비해 행정, 재정의 지방분권화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행정기능의 실질적 지방이양과 그에 상응하는 지방재원의 확충, 재정자율권확대가 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다양한 아이



디어들이 간헐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비리나 불필요한 외유, 선심, 전시행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큰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차원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 자율권의 확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이다.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후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꾸준히 확충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현재의 자원 배분이 기능 배분과 일치하는지는 규명되지않고있다. 보다본질적인문제는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재정 자율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세목과 세율은 물론 과표의 산정과 징수절차에 이르는 거의 전 과정이 법률과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받는 ‘국세 같은 지방세’이다. 뿐만아니라국가정책목표의달성을위해지방세비과세와 감면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그로 인한 세수 결함을 보전하는 장치도 없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조정 역시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자유롭게 못하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를 제외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지원할 지방재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자율권의 허용 범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등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화에 관한 규범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용도가 제한된 재원이다.

정부가 지방세를 국세와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근 발표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서도 볼 수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대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억제 차원에서 높은 세율을 유지해 온 거래과세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그에 따른 세수 결핍을 거래과세 강화를 통해서 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16개 세목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 재산보유과세 실효세율이 기초자치단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재산세 실효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재산세율은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세율 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중앙정부의 토지정책 수단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원조달 수단으로 인정할 때 지방세다운 지방세의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지원할 지방재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자율권의 허용 범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방안 등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화에 관한 규범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최근에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 제도가 일관된 기

본원리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도 입되거나 개정되어 왔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양여금은 일부 부적절한 대상 사업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고 지방 SOC를 지원하는 넓은 의미의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칸막이가 없는 이러한 포괄보조금은 공식에 따라 배분되며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일단 선정된 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도로사업과 수질환경 개선사업 간 자원 배분은 지방비 부담을 부문별로 차등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 확대와 함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방지하도록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원 보수수준의 제고, 재정정보의 공개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불과 5~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과를 따지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비효율, 시책착오를 직책하는 동시에 이들이 스스로의 실수를 통해 깨우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아량이 필요하다. **이재명**

현안분석



1.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鄭 在 皓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2. 전자상거래와 조세 - OECD TAG 보고서 -

洪 範 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鄭 在 皓 초청연구위원(jcheung@kipf.re.kr)

미국에서는
장기호황으로재정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막대한규모의재정흑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대통령 선거기간중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하였다.

1.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는 사상 유래 없는 장기간의 호황을 누려 왔다. 이와 같은 장기 호황에 의해 ‘신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그리고 정보산업의 발달 등 현재 미국의 경제가 누리고 있는 장기 호황을 표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장기 호황으로 재정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흑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대통령 선거기간중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재정흑자를 조세감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시 후보의 주장이 큰 논쟁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장기호황이 2000년 말부터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한 수단으로 세금감면 문제가 다시한번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제43대 대통령으로 조지 W. 부시(George W. Bush)가 취임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중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전면적인 조세감면(Across-the-Board Tax Cut)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정책은 미국 공화당의 기본 노선인 ‘작은 정부론’ 및 ‘시장경제체제’ 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감세방안은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5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10년차에 가서 감세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감세 규모 및 세부 내용 등은 향후 미국 상하원의 법률 통과 및 예산안 승인 등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현실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감세안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케인즈학과 경제학자들은 감세와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GDP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얼마만큼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는 총공급곡선의 형태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II. 감세를 통한 재정정책

1. 이론적 배경

가. 수요측면

전통적으로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 한 국가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총소득(Y)은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그리고 순수출(수출(X)-수입(IM))로 나타낼 수 있다.

$$Y = C + I + G + X - IM$$

소비지출(C)은 세금(T)을 지불하고 난 후 가처분소득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C = a + b(Y-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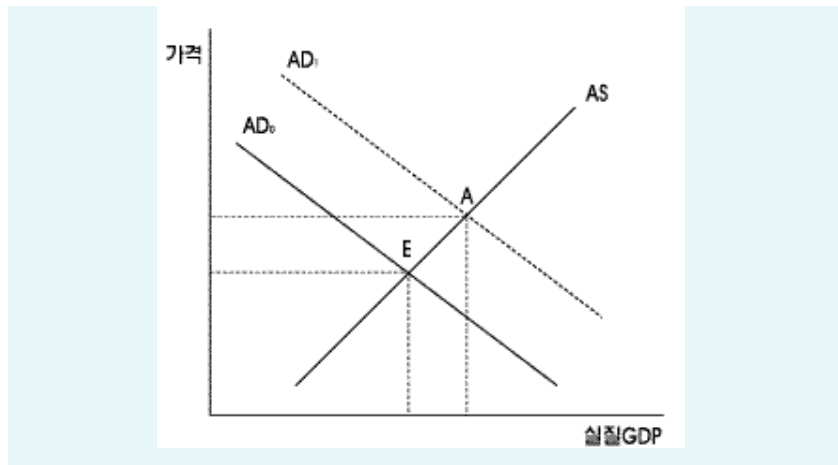
여기서 계수 b는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을 나타낸다.

위의 총소득 식에서 정부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변수로 세금과 정부지출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낮출 경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이

공급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급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높은 세율과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일할 의욕과 저축 및
투자를 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하여 총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는 정부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총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세와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는 총공급곡선의 형태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총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울 경우 이러한 팽창적인 재정정책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 정도는 미미하지만 총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까울 경우 그 효과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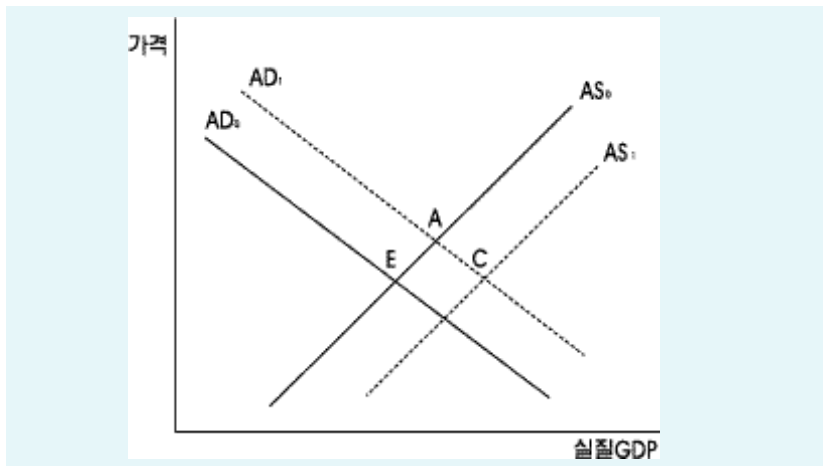
[그림 1] 총수요곡선의 이동



나. 공급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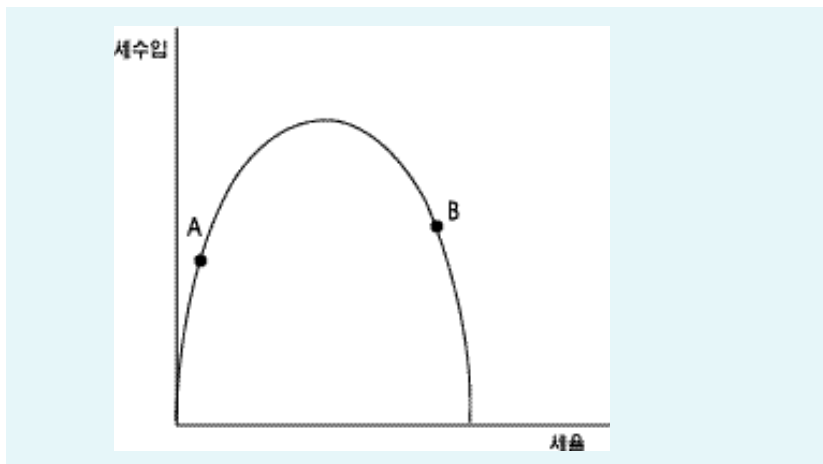
케인즈의 이러한 이론에 반하여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공급경제학자(supply-side economist)라고 부른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급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높은 세율과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일할 의욕과 저축 및 투자를 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낮출 경우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므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저축을 할 것이다. 또한 기업도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더욱 늘어나면 투자를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공급과 자본의 축적의 증가는 총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로써 물가와 실업률도 감소될 것이다. 즉, 공급측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물가와 실

[그림 2]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1)



래퍼곡선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감세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래퍼곡선



업률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1980년대 미국 경제학자 래퍼(Laffer, Arthur)가 제안한 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0%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할 경우 세수도 함께 증가하지만 세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세수

미국 정부는
1974~75년,
1980~82년,
1990~91년에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정책을
사용하였다.

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세율이 100%인 경우 세수는 없게 된다.

이러한 래퍼곡선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감세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감세정책은 3년여에 걸쳐 개인소득세를 25% 낮추고 법인세도 낮추어 투자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Becsi(2000)에 의하면 래퍼곡선이 상하로 이동할 경우 정부에서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3]에서 세율이 점B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세율을 낮추면 세수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래퍼곡선이 아래로 이동할 경우 오히려 세수는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Willes(1979)는 현재 세율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현재 점B에 있다고 해도 약한 감세정책으로도 점A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세수입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감세정책이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Feldstein and Slemrod(1978), Feldstein(1978), Boskin(1978) 등은 감세정책은 자본이득세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Burtless and Hausman(1978), Rosen(1976) 등은 감세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2. 미국의 재정정책

미국은 1970년 이후 크게 세 번의 불경기(recession)를 경험하였다. 미국 정부는 1974~75년, 1980~82년, 1990~91년에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정책을 사용하였다.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전쟁은 곧 석유파동을 불러와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1974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12%에 이르렀으며 실업률도 9%에 이르렀다. 포드(Ford) 대통령은 연두회견을 통하여 16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안을 의회에 제안하였고 의회는 이보다 더 많은 210억달러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감세정책과 일시적인 사회보장세 감세 등은 실질개인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으며, 이로써 하반기부터는 GNP도 상승하게 되었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제2차 석유파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 초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16%에 이르렀고, 1981년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물가는 안정되어 물가상승률이 약 4%로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은 11%에 이르렀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 동안 취해온 총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재정정책보다는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더 선호하였다. 공급경제정책(supply-side policy)은 감세를 통해 일할 인센티브와 저축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에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총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

레이건 대통령은 그 동안 취해온 총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재정정책보다는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더 선호하였다.

<표 1> GDP와 연방정부 예산

(단위 : 10억달러, %)

	GDP	예산			GDP 대비비율		
		수입	지출	재정수지	수입	지출	재정수지
1979	2,503.8	463.3	504.0	-40.7	18.5	20.1	-1.6
1980	2,732.1	517.1	590.9	-73.8	18.9	21.6	-2.7
1981	3,061.6	599.3	678.2	-79.0	19.6	22.2	-2.6
1982	3,228.6	617.8	745.8	-128.0	19.1	23.1	-4.0
1983	3,440.5	600.6	808.4	-207.8	17.5	23.5	-6.0
1984	3,839.4	666.5	851.9	-185.4	17.4	22.2	-4.8
1985	4,136.6	734.1	946.4	-212.3	17.7	22.9	-5.1
1986	4,401.4	769.2	990.5	-221.2	17.5	22.5	-5.0
1987	4,647.0	854.4	1,004.1	-149.8	18.4	21.6	-3.2
1988	5,014.7	909.3	1,064.5	-155.2	18.1	21.2	-3.1
1989	5,405.5	991.2	1,143.7	-152.5	18.3	21.2	-2.8
1990	5,735.6	1,032.0	1,253.2	-221.2	18.0	21.8	-3.9
1991	5,930.4	1,055.0	1,324.4	-269.4	17.8	22.3	-4.5
1992	6,218.6	1,091.3	1,381.7	-290.4	17.5	22.2	-4.7
1993	6,558.4	1,154.4	1,409.5	-255.1	17.6	21.5	-3.9
1994	6,944.6	1,258.6	1,461.9	-203.3	18.1	21.1	-2.9
1995	7,324.0	1,351.8	1,515.8	-164.0	18.5	20.7	-2.2
1996	7,694.6	1,453.1	1,560.6	-107.5	18.9	20.3	-1.4
1997	8,185.2	1,579.3	1,601.3	-22.0	19.3	19.6	-0.3
1998	8,673.5	1,721.8	1,652.6	69.2	19.9	19.1	0.8
1999	9,130.4	1,827.5	1,702.9	124.6	20.0	18.7	1.4
2000	9,824.4	2,025.2	1,788.8	236.4	20.6	18.2	2.4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었지만
총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기가 부양되기보다는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되고
이에 소비 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2> 연방정부 부채

(단위 : 10억달러, %)

	연방정부부채			GDP 대비비율		
	총액	공공채무	정부소유	총액	공공채무	정부소유
1979	829	640	189	33.1	25.6	7.6
1980	909	712	197	33.3	26.1	7.2
1981	995	789	205	32.5	25.8	6.7
1982	1,137	925	213	35.2	28.6	6.6
1983	1,372	1,137	234	39.9	33.1	6.8
1984	1,565	1,307	258	40.8	34.0	6.7
1985	1,818	1,507	310	43.9	36.4	7.5
1986	2,121	1,741	380	48.2	39.5	8.6
1987	2,346	1,890	456	50.5	40.7	9.8
1988	2,601	2,052	549	51.9	40.9	11.0
1989	2,868	2,191	677	53.1	40.5	12.5
1990	3,207	2,412	795	55.9	42.1	13.9
1991	3,598	2,689	909	60.7	45.3	15.3
1992	4,002	3,000	1,002	64.4	48.2	16.1
1993	4,351	3,249	1,103	66.3	49.5	16.8
1994	4,644	3,433	1,210	66.9	49.4	17.4
1995	4,921	3,605	1,316	67.2	49.2	18.0
1996	5,182	3,735	1,447	67.3	48.5	18.8
1997	5,370	3,773	1,597	65.6	46.1	19.5
1998	5,479	3,722	1,757	63.2	42.9	20.3
1999	5,606	3,633	1,973	61.4	39.8	21.6
2000	5,629	3,410	2,219	57.3	34.7	22.6

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률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었지만 총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기가 부양되기보다는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되고 이에 소비 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레이건-부시 대통령 시절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하여 큰 사회적인 논쟁으로 등장하였다.

세 번째 불황기였던 1990년대 초 클린턴 대통령은 재정적자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폭적인 증세정책을 실시하였다. 선거기간중 레이건의 공급경제학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던 클린턴 대통령도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기술력의 개발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공급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R&D 부문에 대해 감세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현재 부시 대통령이 실시하고자 하는 감세안과 비교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993년에 실시한 세제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3. 클린턴의 1993년 세제개편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 공공투자의 증대라는 세 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예산조정법안(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¹⁾도 위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면서 특히 세제개편에 초점을 두었다. 1993년 세제개편에서는 더 넓은 과세표준에 대해 한계세율을 상당히 인상했고, 일정한 유형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유인을 다시 도입했다. 이는 지난 1986년 세제개혁법 기본원리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1986년 세제개혁법의 기본원리는 세율을 낮추고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이것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 세제혜택을 폐지하여 과세기반을 넓힘으로써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율

15%, 28%, 31%의 세 단계로 되어 있던 기존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에 36%와 39.6%의 과세구간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새로 생긴 고세율은 소득원이 2명인 가족에 대해 결혼에 따른 불이익(marriage penalty)을 심화시켰다. 예를 들면, 각각 11만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독신은 새로운 고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 두 명이 결혼하면 과세소득 중 8만달러는 36%의 세율로 과세되어, 추가적으로 4천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장기적 공공투자의 증대라는 세 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였다.

1) 1993년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 미국 공화당으로부터 단 한표의 지지도받지 못했다.

1993년 세제개편에서는 더 넓은 과세표준에 대해 한계세율을 상당히 인상했고, 일정한 유형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유인을 다시 도입했다.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일정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한계금액을 초과하는 조정총소득의 2,500달러마다 2%씩 감소됨). 이 단계적 삭감은 199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이를 영구화하였다. 이러한 공제액 삭감은 특정 소득범위의 납세자에게는 세율인상 효과를 초래하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계층의 경우 최고세율이 약 2/3 3/4%p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3)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s)

항목별 공제 한도 영구화는 공제 한도하에서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의료비, 재해와 도난손실, 투자이익 제외)가 특정 기준금액(매년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되는)을 초과하는 조정총소득 잔여분의 3%만큼 삭감된다. 이때 삭감은 이들 항목별 공제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1993년의 기준금액은 개인과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10만 8,450달러, 부부별산의 경우 5만 4,225달러이다. 항목별 공제에 있어 삭감은 1995년 12월 31일 종료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영구화하였다. 항목별 공제한도는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을 1.188%(39.6×0.03) 증가시켰으며, 또한 최고세율(39.6%)과 항목별 공제한도를 결합하면 최고한계세율은 40% 이상으로 증가된다.

나.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는 통합과세되기 때문에 개인의 누적적인 증여 및 상속재산에 대해서 단일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된다. 1992년부터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인 53%와 55%를 각각 폐지하고 250만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50%로 경감할 계획이었으나, 클린턴은 이를 임시조항(1984 92년)에서 영구조항으로 확정하였다. 상속·증여금액이 250만 300만달러인 경우에는 53%,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55%가 적용된다. 누진단계에서 오는 세부담 경감을 보충하기 위해 1,000만 2,104만달러에 대해서는 60%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세대생략이전(generation skipping transfer)에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53% 및 55%의 최고세율은 모든 세대생략이전에도 적용된다.

III. 미국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

미국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W. 부시는 선거 기간중 핵심 공약으로 전면적인 조세감면(Across-the-Board Tax Cut)정책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정책은 미국 공화당의 기본노선인 ‘작은 정부론’ 및 ‘시장경제체제’ 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1. 감세안 주요 내용

가. 개인소득세

감세안은 현행 세법상 15%, 28%, 31%, 36%, 39.6% 등 5개로 분류된 납세계층을 10%, 15%, 25%, 33%의 4개 계층으로 줄이고, 최고 세율은 39.6%에서 33%로, 최저 세율은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원안대로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는 최고 세율을 39.6%에서 36%로 낮추면서 세율도 4단계가 아닌 6단계로 수정하여 통과되었다.

<표 3> 최근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부시前대통령		3단계	15%, 28%, 31%
클린턴대통령		5단계	15%, 28%, 31%, 36%, 39.6%
부시대통령	하원	4단계	10%, 15%, 25%, 33%
	상원	6단계	10%, 15%, 25%, 28%, 33%, 36%

10%의 세율은 기존의 15%의 세율이 부과되던 구간 일부에 새롭게 신설되었다. 최저 세율이 10%로 인하됨에 의해 납세자에게 300달러(독신가구)에서 600달러(부부합산신고가구)의 감세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1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허용되는 500달러 세액공제를 1,000달러로 두 배 인상하면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세율 변경과 자녀세액공제 인상으로 두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의 경우 한계세율이 약 40% 이상 감소하였고, 한 자녀를 가진 경우 약 50% 정도 감소하였다.

세율 변경과
자녀세액공제 인상으로
두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의 경우
한계세율이 약 40% 이상
감소하였고,
한 자녀를 가진 경우
약 50% 정도 감소하였다.

상속·증여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10년 후에 완전 폐지한다.

부부합산 신고자에 대한 특별공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세제개편(1993년)으로 소득원이 2명인 가족이 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불이익을 심화시켰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부의 소득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의 10%(최고 3,000달러까지)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였다.

기부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항목별 공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납세신고자의 70%에 이른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부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기부금증가에 기여코자 하였다.

나. 상속·증여세폐지

상속·증여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10년 후에 완전 폐지한다. 이를 폐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저축에 대한 한계세율이 68%(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합산하여)에 이르며, 이러한 상속·증여세는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저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다. 기타감세방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D Tax Credit) 영구화는 현재 R&D 증가분에 대한 20%의 세액공제를 영구화하여 장기적인 연구 및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교육준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경우(Education IRA)에는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부 목적으로 인출되는 개인연금소득은 비과세하며 법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도 인상한다.

2. 감세 일정

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새롭게 신설되는 10% 소득세율에 대해 2001년도에 12%로 시작하여 2003년 11%, 2006년에 10%로 낮추도록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28%, 31%, 36%, 39.6%의 소득세율은 매년 조정되어 2006년에 이르러 25%와 33%로 낮추어진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는 지난 5월 새롭게 신설되는 10% 소득세율을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표 4> 하원의 소득세율 인하 계획(부시 대통령안)

(단위: %)

	신설	현행 15%	현행 28%	현행 31%	현행 36%	현행 39.6%
2002	12	15	27	30	35	38
2003	11	15	27	29	35	37
2004	11	15	26	28	34	36
2005	11	15	26	27	34	35
2006 이후	10	15	25	25	33	33

주: 새롭게 신설되는 10% 소득세율은 2001년부터 12% 적용.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Feb. 2001.

상·하원의 최종적인 합의안은 소득세율 구조는 상원안에 기본을 두어 6단계를 유지하면서 소득세율 인하는 하원안과 동일하게 2006년까지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표 5> 상원의 소득세율 인하 계획

(단위: %)

	신설	현행 15%	현행 28%	현행 31%	현행 36%	현행 39.6%
2002 2004	10	15	27	30	35	38.6
2005 2006	10	15	26	29	34	37.6
2007 이후	10	15	25	28	33	36

주: 새롭게 신설되는 10% 소득세율은 2001년부터 적용.
자료: U. S. Congress

기존의 28%, 31%, 36%, 39.6%의 소득세율은 2007년까지 25%, 28%, 33%, 그리고 36%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 통과되었다.

상·하원의 최종적인 합의안은 소득세율 구조는 상원안에 기본을 두어 6단계를 유지하면서 소득세율 인하는 하원안과 동일하게 2006년까지 낮추기로 결정하였

<표 6> 최종적인 소득세율 인하 합의안

(단위: %)

	현행 28%	현행 31%	현행 36%	현행 39.6%
2001 2003	27	30	35	38.6
2004 2005	26	29	34	37.6
2006 이후	25	28	33	35

주: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상·하원의 최종적인
합의안에서 2001년부터
자녀세액공제액을
600달러로 인상하여
2005년에 700달러,
2009년에 800달러,
2010년에 1,000달러를
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표 7> 하원의 자녀세액공제 인상 및 부부합산특별공제 계획

(단위: 달러)

	현행	2002	2003	2004	2005	2006 이후
자녀세액공제액	500	600	700	800	900	1,000
부부합산신고에대한특별공제	없음	600	1,200	1,800	2,400	3,000

자료: Citizens for Tax Justice, Feb. 12, 2001.

다. 다만 상원안과 다르게 2002년부터 실시하는 세율인하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최고 세율도 1% 더 낮추어 35%(2006년)로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3월 하원에서 통과된 자녀세액공제 인상 및 부부합산신고에 대한 특별공제 계획은 <표 7>과 같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지난 5월 11일 자녀세액공제를 2001년부터 600달러로 인상하여 2004년에 700달러, 2007년에 800달러, 2010년에 900달러, 그리고 2011년에 1,000달러를 공제해주고, 부부합산 특별공제는 2007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상·하원의 최종적인 합의안에서 2001년부터 자녀세액공제액을 600달러로 인상하여 2005년에 700달러, 2009년에 800달러, 2010년에 1,000달러를 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표 8> 자녀세액공제 인상 합의안

(단위: 달러)

	현행	2001	2004	2005	2008	2009	2010 이후
자녀세액공제액	500	600	700	800			1,000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나. 상속·증여세

지난 4월 미 하원에서는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2002년부터 조정하여 2011년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상속세의 세율을 2003년부터 조정하여 2011년에 이르러 폐지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한도도 최고 400만달러(2010년)까지 대폭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표 9>에서는 현

<표 9> 최고 상속세율 폐지 일정

(단위 : %)

	하원	상원
2002	53	50
2003	53	49
2004	49	48
2005	49	47
2006	49	46
2007 10	47	45
2011	완전폐지	완전폐지

상·하원의 최종 합의안에서는 최고 상속세율을 2002년에 50%로 낮추며 점진적으로 45%(2007년)까지 낮추기로 하였으며, 상속세를 2010년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자료: U. S. Congress

행 최고 세율인 55%의 경우를 예로 들어 폐지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상·하원의 최종적인 합의안에서는 대부분 상원안에 기초하여 최고 상속세율을 2002년에 50%로 낮추며 점진적으로 45%(2007년)까지 낮추기로 하였으며, 상속세 공제액은 현재 67.5만달러에서 2002년에 100만달러, 2004년에 150만달러, 2006년에 200만달러, 2009년에 35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며, 상속세를 1년 앞당겨 2010년에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총 감세 효과

감세방안은 5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10년차에 가서 감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기간중 감세 규모는 세율 인하에 따른 1조 3천억 달러와 함께 감세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약 3천억달러를 포함하여 1조 6천억달러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재정흑자 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언급되고 있는 1조 6천억달러는 순수한 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규모를 의미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약 4천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총 감세 규모는 2조달러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Auerbach and Gale(2001)에 의하면 AMT(alternative minimum tax) 조정까지도 고려할 경우 그 규모는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실질 총 감세 규모는 2조 5천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초에 이루어진 2002년도 예산안 통과 등에 의해 11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 통과 등에 의해
II년에 걸쳐
1조 3,500억달러를
감세하는 것으로
의회 합의가 이루어졌다.

1조 3,500억달러를 감세하는 것으로 의회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안의 특징은 세율인하를 2001년부터 실시하여 첫해에 약 1천억달러의 감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0> 감세방안별 감세 효과(선거기간중)

(단위: 달러)

감세방안	감세효과
○개인소득세율 인하 - 5단계(15%, 28%, 31%, 36%, 39.6%)에서 4단계(10%, 15%, 25%, 33%)로 인하 조정	7,270억
○상속·증여세 폐지 - 상속·증여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10년 후 폐지	2,360억
○자녀세액공제 인상 -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를 1,000달러로 두 배 인상	1,620억
○부부합산 신고자에 대한 특별공제 - 배우자(적은 소득자) 소득의 10%를 소득공제 *2006년 3만 달러가 공제 한도	880억
○표준공제자에 대한 기부금공제 인정 - 개별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부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760억
○기타 감세 방안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영구화 - 교육준비금에 대한 공제 한도 인상 - 기부 목적으로 인출되는 개인연금 소득 비과세 - 법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등	310억
총 감세효과	1조 3,200억

IV. 감세정책 관련 논쟁

1. 조세의 공정성과 상속세 폐지

<표 10>에서 보듯이 감세정책에 따른 효과는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자녀세액공제 인상, 부부합산 신고자에 대한 특별공제 순서이다. 이번 절에서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인상 및 부

부합산 신고자에 대한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와 상속·증여세의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등에 대해 알아보자.

가. 감세에 따른 형평성

사망자의 2%에게만 적용되는 상속세의 폐지, 고소득층에 보다 유리한 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이 선거기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The Citizens of Tax Justice’는 상위 10%(연간소득 10만달러 이상) 가구에 감세혜택의 60% 이상이 돌아가며, 하위 60%(연간소득 4.4만달러 이하) 가구에 계는 12.7%의 혜택만이 돌아간다고 분석했다²⁾. 1%의 소득 상위계층(연간소득 37만달러 이상)은 연평균 5만 4,48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림으로써 전체 감세혜택의 45%가 이들에게 돌아간다. 하위 20%의 소득계층(연간소득 1.5만달러 이하)의 경우 전체 감세혜택의 0.8%만이 그들에게 돌아가며, 연평균 47달러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주당 1달러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도 감세 혜택의 40%가 1%에 불과한 부유층에 돌아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상원에서 통과된 소득세 인하안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The Citizens of Tax Justice’는 상원안에 의해 상위 10% 가구에 감세혜택의 54.6%, 하위 60% 가구에 15.7%의 혜택만이 돌아간다고 분석하였다³⁾. 특히, 1%의 소득 상위계층에게 전체 감세혜택의 35%(연평균 4만 4,293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가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에 비해 그 혜택이 줄어들었다.

중립적 입장에 있는 의회의 ‘Joint Committee on Taxation’은 2005년의 경우 감세혜택의 절반 이상이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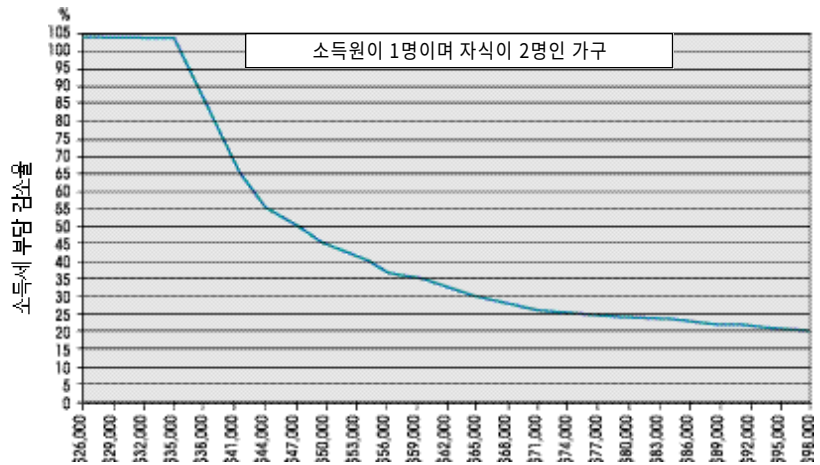
폴 크루그먼도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개인이 내는 연방세금에는 급여세, 소득세, 상속세 등이 있으나, 이중 급여세는 고정세율 15.3%로 연방세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감세안에서 급여세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율은 대부분 10%를 넘지 않으나 고소득자의 경우 30%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은 그대로 둔 채, 부유층이 내는 소득세와 상속세

상속세의 폐지,
고소득층에 보다 유리한
세율 인하등으로 인해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이
선거기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이 2001년 현재 완전히 시행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된 추정치이다.
3) 감세안이 2001년 현재 완전히 시행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된 추정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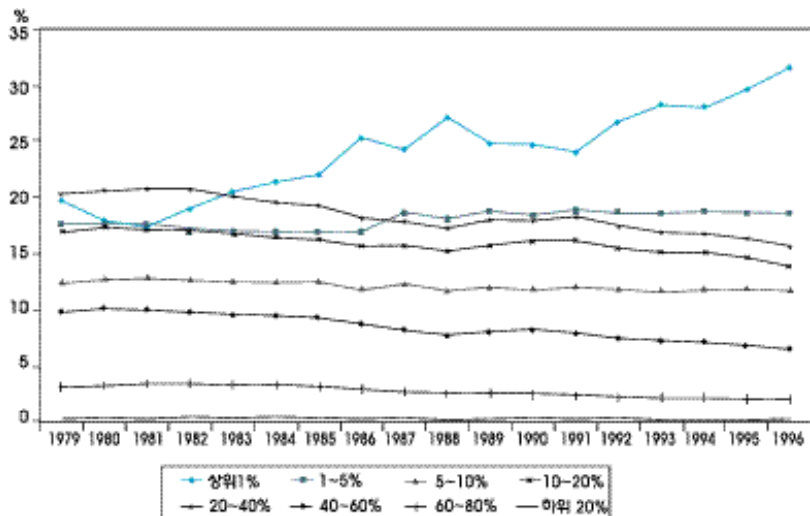
‘Joint Committee on Taxation’은 2005년의 경우 감세혜택의 절반 이상이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귀속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따른 소득세 부담 감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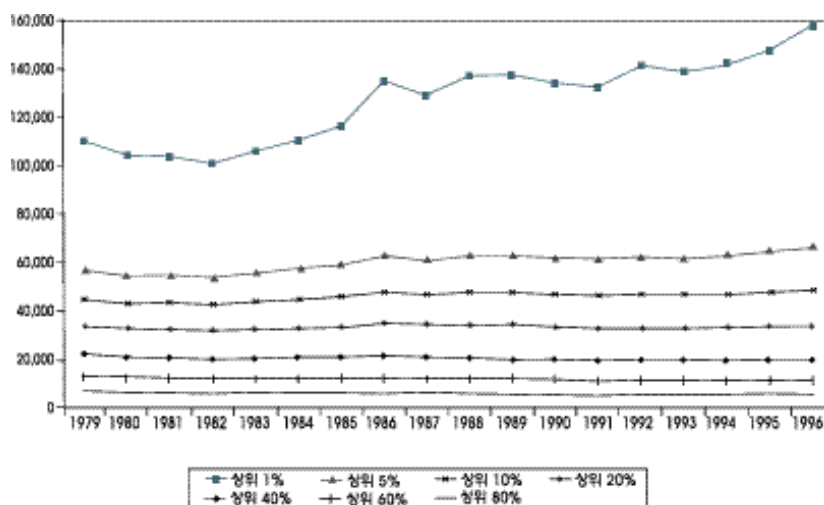
주: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더 높은 비율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됨.
FICA와 주정부 소득세는 제외함.

[그림 5] 총 조세 부담률



자료: Tom Petska, Mike Strudler and Ryan Petska(2000).

[그림 6] 계층별 실질 소득 추이(1982 ~ 84년 기준)



자료: Tom Petska, Mike Strudler and Ryan Petska(2000).

레이건 대통령의
30% 포괄적 감세정책
이후 최고상위 1%
부유층의 총 조세 부담률은
1981년 17.4%에서
1988년 27.2%로
증가했다.
그후 부담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32.6%에
이르렀다

에 대해 대대적인 감면 및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세율 인하가 감세안에 포함될 경우 감세비율은 저소득층이 높겠지만 절대적인 감세액은 상위 소득계층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반해 선거운동 기간중 부시 대통령은 상위 1%가 연방소득세의 1/3을 납부하지만 감세혜택은 1/5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상속세 폐지 효과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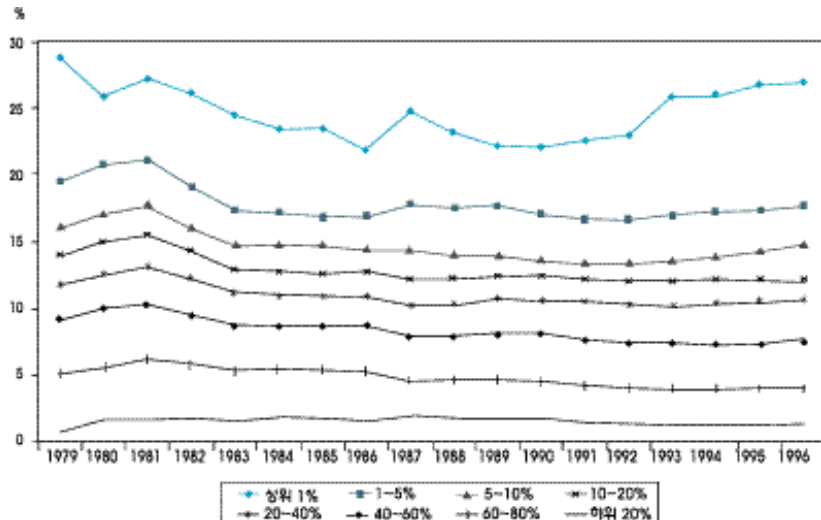
레이건 대통령의 30% 포괄적 감세정책 이후 최고 상위 1% 부유층의 총 조세 부담률은 17.4%(1981년)에서 27.2%(1988년)로 증가했다. 그후 부담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32.6%(1997년)에 이르렀다([그림5] 참조).

즉, 최고 상위 1% 부유층이 납부한 세금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서 곧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최고 상위 1%의 부유층이 이전에 비해 더욱 소득이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정책을 시행한 1980년대의 경우 부유층의 유효세율(혹은 평균세율)은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감세정책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감세정책은
부유층의 유효세율을
감소시키고 증세정책은
부유층의 유효세율을
증가시켰으나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림 7] 유효세율 변화



자료: Tom Petska, Mike Strudler and Ryan Petska(2000).

이후 클린턴 대통령이 증세정책을 시행한 후 부유층의 유효세율은 다시 증가하였으나 그 밖의 계층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부유층의 유효세율을 감소시키고 증세정책은 부유층의 유효세율을 증가시켰으나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나. 상속·증여세폐지

미국의 상속세는 1916년 시행되었다. 1998 회계연도의 상속세 세수는 240억 달러로 총세수의 1.4%였고, 유산 중 과세대상(건수 기준)은 1.9%인 약 5만명 내외였다. 유산가액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2,400건이 상속세의 50% 이상(1997년 기준)이었다.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2,360억달러의 연방 정부세수의감소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상속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윌리엄 H 게이트 시니어(빌 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의 부친)가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상속세 폐지안은 억만장자들의 자녀는 더욱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며 또 이로 인해 생기게 될 정부 수입의 감소는 결국 사회보장, 의료

보험 등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신 자선단체나 기금 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었던 문화가 점차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기부문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 공화당은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이미 과세가 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방해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합산할 경우 저축에 대한 한계세율이 68%에 이르러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저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조그마한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유산으로 받은 경우 재산은 있으나 현금이 없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1993년 조사에 의하면 90%의 유산 상속자들이 유산을 상속받은 지 3년 안에 실패를 하며, 이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상속·증여세를 언급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폐지함으로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이나 농사 등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억만장자들은
상속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표 11>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속·증여세 폐지론

폐지찬성론(공화당)	폐지반대론(민주당)
- 노력의 대가를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중소기업인과 농민에게 지나친 부담 -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과세함은 중복과세 - 최고세율 55%는 과도 - 투자와 저축의욕 저하시킴.	- 중소기업인과 농민은 과세대상 중 5% 미만으로, 대재산가만 실질적 수혜자 - 과세대상인 자산은 대부분 과세되지 않았던 미실현이익으로 중복과세 문제 미미 - 교회, 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감소 : 60억달러 감소예상 - 세수 감소로 사회보장재원 부족: 2,360억달러 세수 감소 예상

2. 경기부양 효과와 물가 상승

당초 과도한 재정흑자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감세안이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한

당초 과도한 재정흑자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감세안이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단으로 더욱거론되고 있다.

하원의 공화당 원내총무인 딕 아미 의원은 감세안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세효과가 2001년부터 나타나도록 소급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02~2006년 동안의 점차적인 세율 인하 대신 2001~2002년 동안의 집중적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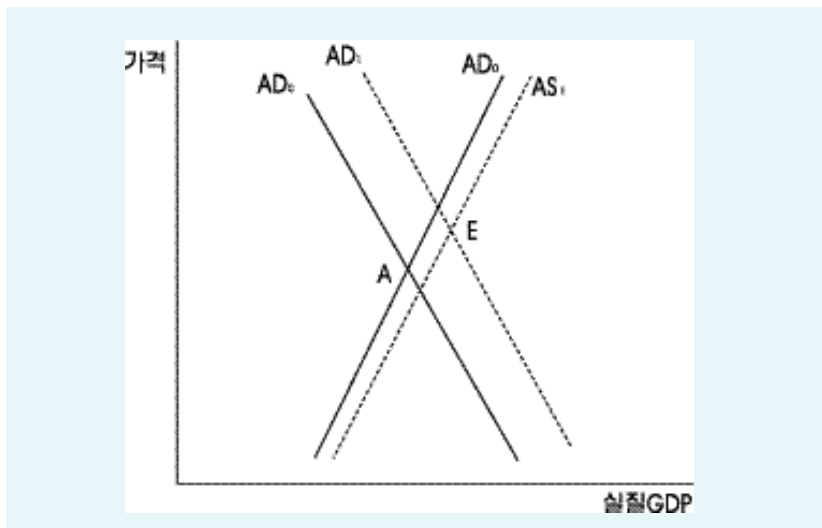
경제학자들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협회의 연례모임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감세정책이 경착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세법개정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세법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경기가 회복되어 오히려 경기과열을 부추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폴 사무엘슨은 재정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폴 크루그먼은 경기가 장기침체 상태라면 감세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침체되기 시작된 경제사이클을 회복시키기 위해 감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10년간 감세를 해도 현재의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수천억달러의 예산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조 6천억달러의 감세정책은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뿐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감세정책이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진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소수 부유층은 소비 규모가 그만큼 늘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혜택이 많아 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하게 되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 스트리트에 있는 경제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감세를 지지하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측에서는 세수 감소 효과가 큰 소득세율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에 감가상각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흑자는 납세자인 국민의 이익으로 전환돼야 하며 감세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민들은 그 동안 미국이 시행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호황으로 이끌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감세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림 8]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2)



감세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입이 어떻게 변할지는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있는데학자들은 이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동시에 우상향할 경우 실질 GDP는증가하지만총공급곡선과총수요곡선의이동폭에의해물가상승률이결정 된다. [그림 2]에서 보는 초기의 균형인 점A에서 물가 상승이 거의 없이 점E로 이동함으로써 실질GDP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림 8]에서 보듯이 총공급곡선의 이동이총수요곡선의이동에비해미미할경우높은물가상승이일어나게된다.

3. 재정수입 규모 및 부채 상환

가. 이론적주장

감세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입이 어떻게 변할지는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있는데학자들은이에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Heller(1978)는 감세를 할 경우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케인즈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의해 총소득을 증가시켜 감세로인한 세수입 감소를 보충하고도 남는 많은 세수입을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세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급측면의 효과(supply effect) 없이순수한 케인즈의 승수효과에 의해서도 감세를 통한 세수입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예산내 흑자를 이용하여
감세를 실시하고
약 1조달러는 예비비로
운영하며, 예산외 흑자중
2조원을 이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고 있다.

Kiefer(1979)는 승수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에 승수효과만으로는 세수입을 전보다 많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Mankiw and Summers(1984)도 1982년에 실시된 감세정책의 결과를 보면 통화정책에 의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감세정책 실시는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Fullerton(1982)은 감세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노동공급탄력성이 클 경우 감세정책으로도 세수입이 예전 수준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공급탄력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서 평균한계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wartney and Long(1984)은과세제도의 여러 요인들이 개인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입을 증가시킬 있다고 주장했고, Linsey(1983)는 높은 유효한계세율을 낮출 경우 조세회피가 감소하여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재정흑자규모

부시 대통령과 미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향후 10년 간 (2002 ~ 2011) 예상되는 연방정부의 재정흑자는 모두 5조 6천억달러에 이를 전

<표 12> 미국의 재정 흑자 예측치

(단위: 10억달러, %)

	세입	세출	재정흑자		
				예산 내	예산 외
2001	2,137	1,853	284	127	157
2002	2,221	1,938	283	112	171
2003	2,324	1,990	334	141	194
2004	2,438	2,050	387	176	211
2005	2,569	2,129	440	203	237
2006	2,698	2,182	516	263	253
2007	2,836	2,250	586	315	272
2008	2,979	2,327	652	363	289
2009	3,131	2,405	726	422	304
2010	3,302	2,487	814	490	324
2011	3,483	2,579	904	560	344
2002 ~ 2011	27,981	22,338	5,644	3,045	2,599

자료: White House, Feb. 2001.

<표 13> 미국의 부채 예측치

(단위: 10억달러)

	총부채	연방정부채무	총공공채무	Uncommitted Fund	순 공공채무
2001	5,637	2,463	3,174	-	3,174
2002	5,666	2,719	2,947	-	2,947
2003	5,723	3,007	2,715	-	2,715
2004	5,777	3,314	2,463	-	2,463
2005	5,846	3,640	2,206	-	2,206
2006	5,901	3,988	1,912	-	1,912
2007	5,939	4,355	1,585	-	1,585
2008	6,141	4,737	1,404	-178	1,226
2009	6,417	5,138	1,279	-452	827
2010	6,770	5,562	1,208	-827	381
2011	7,159	6,001	1,158	-1,288	-130

자료: White House, Feb. 2001.

민주당은 특히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던 레이건과
부시 전대통령 시절로
국가경제를 회귀시킬
우려가 크다며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망이라고 밝혔다.

이중 예산내(on-buget) 흑자가 약 3조 1천억달러이며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외(off-budget) 흑자는 약 2조 5천억달러이다. 이러한 예산내 흑자는 세금을 낮추거나(감세),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산외 흑자는 대부분 Social Security Surplus로서 사회보장제도와 연관된 곳에 사용하거나 혹은 공공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부시 대통령은 예산내 흑자를 이용하여 감세를 실시하고 약 1조달러는 예비비로 운영하며, 예산외흑자중 2조원을 이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히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던 레이건과 부시 전대통령 시절로 국가경제를 회귀시킬 우려가 크다며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회장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1990년대초의 천문학적인 예산적자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중립적인 의회기구인 Joint Committee on Taxation은 감세안으로 인해 국고수입이 10년간 2조 2천억달러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erbach and Gale(2001)은 예산내 흑자는 약 1조 1조 7천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4단계로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세율구조가 단순하며
최고세율도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감세를 실시할 경우
소비지출을 크게
진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4> 미국의 조세 수입

(단위: 10억달러, %)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소비세	기타	총합계	증가율
1979	218	66	139	19	22	463	-
1980	244	65	158	24	26	517	11.6
1981	286	61	183	41	29	599	15.9
1982	298	49	201	36	33	618	3.1
1983	289	37	209	35	30	601	-2.8
1984	298	57	239	37	34	666	11.0
1985	335	61	265	36	37	734	10.1
1986	349	63	284	33	40	769	4.8
1987	393	84	303	32	42	854	11.1
1988	401	95	334	35	44	909	6.4
1989	446	103	359	34	48	991	9.0
1990	467	94	380	35	56	1,032	4.1
1991	468	98	396	42	51	1,055	2.2
1992	476	100	414	46	56	1,091	3.4
1993	510	118	428	48	51	1,154	5.8
1994	543	140	461	55	58	1,259	9.0
1995	590	157	484	57	63	1,352	7.4
1996	656	172	509	54	61	1,453	7.5
1997	737	182	539	57	63	1,579	8.7
1998	829	189	572	58	75	1,722	9.0
1999	879	185	612	70	81	1,827	6.1
2000	1,004	207	653	69	92	2,025	10.8

참고로 레이건과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어온 감세정책 아래서도 총세수입은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1980년 총세수입은 5,170억달러였으며 10년 후인 1990년에는 세수입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증세정책을 펼쳐온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세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2조달러가 넘는 세수입을 기록하였다.

VI. 시사점

1. 조세 감면

정부가 감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실시할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을 실시할 경우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감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총소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한다. 이와 같은 총소비 지출의 증가는 곧 경기를 진작시켜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감세에 의한 재정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감세에 의해 얼마나 큰 폭으로 소비지출의 증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 미국의 경우 부시대통령의 감세혜택이 대부분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 고소득층의 소비는 감세에 의해 크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경기부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함께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도 Carroll(2000)은 일본 자료를 이용하여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 영구적인 감세정책이 일본 사람들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을 통한 일본의 경기부양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 구조는 4단계로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세율 구조가 단순하며 최고세율도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감세를 실시할 경우 소비지출을 크게 진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총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공급경제학자의 주장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 크게 우세하였다. 공급경제학자들은 감세를 실시할 경우 국민과 기업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이로써 더 많이 일하고 투자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미국의 노동공급이 탄력적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책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 나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감세를 통한 총공급의 증가는 미국보다도 그 효과가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세 수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감세를 실시할 경우 세수입이 감소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Agell and

Agell and Persson(2000)은 감세정책으로 세수입을 증가시킬 확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작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
감세를 실시하기는
재정의 건전성 달성과
공평과세문제라는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ersson(2000)은 감세정책으로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OECD 자료를 이용하여 각 회원국의 세율이 과연 래퍼곡선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즉 앞의 [그림 3]에서 보듯이 각 회원국들의 세율이 점A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은 점B에 위치하고 있어 감세정책을 실시할 경우 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모형에 사용된 모수에 의해 결과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사용한 23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점A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세정책으로 세수입을 증가시킬 확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작다는 결론을 얻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향후 10년간 발생할 5조 6천억달러의 흑자를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며, 이와 더불어 등장한 것이 감세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감세를 실시하기에는 재정의 건전성 달성과 공평과세문제라는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정책으로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달리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감세정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GDP 비율이 안정되지 않았고,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된 대규모 지급보증채의 만기 도래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안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많은 재정·금융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바 다른 정책과 중복되거나 혹은 시차문제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세수 기반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공평과세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2. 상속세 폐지 논의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폐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재정환경, 조세환경, 사회환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재정환경 면에서 미국은 재정흑자의 처리를 위한 감세방안으로 상속세 폐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정적자 상태이기에서 다른 상황이다.

조세환경 또한 미국은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근로, 사업, 임대소득, 이자, 배당, 이혼부양비, 연금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포괄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득과 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장치인 상속·증여세를 계속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열거주의에 의해 소득세

를 과세하고 있고 전반적인 납세 수준이 아직 낮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환경 면에서는 미국은 기부문화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상속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고,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경우도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분배 개선 요구, 재벌에 대한 인식 등의 영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높은 상태이다.

참고문헌

한국조세연구원,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개정 세법 분석』, 1994.

_____, 「미국의 상속세 폐지의 논의와 시사점」, 조세연구 Brief, 01-01, 2001.

Agell, Jonas and Mats Persson, “On the Analytics of the Dynamic Laffer Curve,”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383, December 2000.

Auerbach, Alan and William Gale, “Tax Cuts and the Budget,” Brookings Institution, March 2001.

Baumol, William J. and Alan S. Blinder, *Macroeconomics: Principles and Policy*, Seventh Edition, Orlando: The Dryden Press, 1998.

Becsi, Zsolt, “The Shifty Laffer Curve,”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Economic Review*, Third Quarter, 2000, pp. 53-64.

Boski, Michael J., “Taxation, Saving and the Rate of Intere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April 1978, pp. s3-s27.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istorical Tables*, Fiscal year 2002.

Burtless, Gary and Jerry A. Hausman, “The Effect of Taxation on Labor Supply: Evaluating the Gary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December 1978, pp. 1103-30.

Carroll, Christopher, “ ‘ Risky Habits ’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Permanent Income, or, How Much Would a Permanent Tax Cut Boost Japanese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 No. 7839,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ugust 2000.

Case, Karl E. and Ray C. Fair,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Fourth Edi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96.

우리나라는
소득분배 개선 요구,
재벌에 대한 인식 등의
영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높은
상태이다.

- Citizens for Tax Justice, "When Would the Bush Tax Plan Take Effect?", Feb. 12, 2001.
- _____, "CTJ Analysis of Bush Plan Updated to 2001 Levels, Feb. 27, 2001.
- _____, "House GOP's version of second part of Bush income tax cuts is on-track with President's proposals," March 22, 2001.
- _____, "New Estimates Show Cost of Bush Tax Plan Continues to Rise, March 8, 2001.
- Feldstein, Martin, "The Rate of Return, Taxation, and Personal Savings," *The Economic Journal*, 88, September 1978, pp. 482-87.
- _____, and Slemrod, Joel,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Some Time Series Analysis," *Tax Notes*, August 7, 1978.
- Fullerton, Don, "On the Possibility of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s and Government Revenu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 October 1982, pp. 3-22.
- Gwartney, James and James Long, *Income Tax Avoidance and an Empirical Estimation of the Laffer Curve*, Florida State University, mimeo, July 1984.
- Heller, Walter, "The Kemp-Roth-Laffer Free Lunch," (Reprinted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12, 1978, p. 20.) *The Economics of the Tax Revolt: A Reader*, pp. 46-49. Edited by Arthur B. Laffer and Jan P. Seymou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9.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Description of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Act of 2001*, February 27, 2001.
- _____, *Summary of Provisions Contained in the Conference Agreement for HR 1836,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May 26, 2001.
- Kiefer, Donald W., "An Economic Analysis of the Kemp/Roth Tax Cut Bill H. R. 8333: A Description, An Examination Effects," (Reprinted from *the Congressional Record*, August 2, 1978, pp. H7777-H7787.) *The Economics of the Tax Revolt: A Reader*, pp. 13-27. Edited by Arthur B. Laffer and Jan P. Seymou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9.

Lindsey, Lawrence B., "Alternatives to the Maximum Tax on Earned Income," *Behavioral Simulation Methods in Tax Policy Analysis*, Edited by Martin Feldste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_____, "Taxpayer Behavior and The Distribution of The 1982 Tax Cut, NBER Working Paper No. 1760,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October 1985.

Mankiw, N. Gregory and Lawrence H. Summers, "Are Tax Cuts Really Expansionary," NBER Working Paper No. 1443,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October 1984.

Petska, Tom and Mike Strudler, "Income, Taxes, and Tax Progressivity: An Examination of Recent Trends i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Income and Taxes," IRS, 2000.

_____, _____ and Ryan Petska, "Further Examination of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Income and Taxes Using a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Measure of Income," IRS, 2000.

Rosen, Harvey, "Taxes in a Labor Supply Model with Joint Wages-Hours Determination," *Econometrica*, May 1976, pp. 485-507.

Spratt Jr., John M., "The Bush Budget: Big Tax cuts and Fuzzy Math," House Budget Committee Democratic Caucus, March 6, 2001.

Willes, Mark H., "The Tax Cut Illusion," <http://minneapolisfed.org/pubs/ar>, 1979.

Wilson, D. Mark and William W. Beach, *The Economic and Budgetary Effects of President Bush's Tax Relief Plan*, CDA01-01, The Heritage Foundation, February 22, 2001.

_____, _____ and Rea S. Hederman, Jr., *A Report of the Heritage Center for Data Analysis*, CDA01-02, The Heritage Foundation, March 7, 2001.

White House, *A Blueprint for New Beginnings-A Responsible Budget for America's Priorities*, February 2001.

_____, *The President's Agenda for Tax Relief*, March 2001.

U.S. Congress, <http://thomas.loc.gov/vv>. H.R. 1836, May 23, 2001.

전자상거래와 조세

- OECD TAG 보고서 -



洪範敎 연구위원(hong@kipf.re.kr)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제적인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지 아직 10년이 채 안 되지만 전자상거래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정보화로 대표되는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상거래 형태인 전자상거래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전자상거래가 국내의 거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상거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제적인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는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이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성화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는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선진국 모임인 OECD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OECD는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세제 및 조세행정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

1) 현재는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에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터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의 핀란드 투르크 회의, 1998년의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를 거쳐 업계(business) 및 비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s)을 결성하였고, 2001년 2월에 이들 TAG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TAG 보고서는 그 동안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 논의에 있어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반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²⁾.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향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OECD는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세제 및 조세행정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II. OECD 조세논의 동향

1. OECD에서의 논의 경위

OECD에서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작업반 및 기술자문그룹의 역할을 알기 위하여 그 동안의 논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OECD는 통신혁명이 세제 및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1996년 6월에 재정위원회(CFA) 산하에 작업반(working party)을 구성하였다.

제1작업반³⁾에서는 기존의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사용되고 있던 개념들이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검토하고, 고정사업장 및 사용료소득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검토하고 있다. 제6작업반⁴⁾에서는 OECD의 이전가격지침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8작업반⁵⁾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전반적인 조세순응 및 조세회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소비세 특별 위원회(Special sessions on consumption taxes)에서는 EU와 협력하여 온라인 제품의 공급장소를 결정하는 문제와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회는 제9작업반⁶⁾으로 발전

2) 이들 보고서는 참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3) WP No.1 on Double Taxation and Related Questions

4) WP No.6 on Tax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5) WP No. 8 on Tax Avoidance and Evasion

6) WP No. 9 on Consumption Taxes

투르크 회의에서
세목별로 전자상거래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98년 6월 재정위원회는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을 채택하여
오타와 각료회의에
상정하였다.

하였으며, 작업반 아래 소그룹(Subgroup on Electronic Commerce)을두고 소비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작업반들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1997년 11월 핀란드의 투르크에서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하에 전자상거래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세목별로 전자상거래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98년 6월 재정위원회는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채택하여 오타와 각료회의에 상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내 용
중립성(neutrality)	전자상거래상호간또는 전통적상거래와전자상거래간조세취급이 중립적이고공평해야함.
효율성(efficiency)	세무당국의징수비용과납세자의협력비용이최소화되어야함.
명확 · 간편성 (certainty and simplicity)	조세원칙은납세자가결과를예측할수있도록분명하고단순해야함.
효과 · 공정성 (effectiveness and fairness)	전자상거래과세는적기에정확한세액을부과하여야하고, 탈세및조세회피의가능성이최소화되어야하며공정해야함.
유연성(flexibility)	과세규정도기술및산업발전예탄력적 · 동태적으로대응할수 있어야함.

자료: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July 1998.

1998년 10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는 「A Borderless World -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로 첫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어 그 동안의 노력을 가시화시켰다. 동 회의에서는 집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 ① 전자상거래가 서버상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될 때,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윤을 배정하는 데 있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 ③ 조세조약상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불의 성격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

의할 것, ④ 전자상거래를위한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할 것 등이다.

1998년의 오타와 회의 결과 1999년 1월에 5개의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s)이 조직되었다. OECD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논의에 업계(business) 및 비회원국과의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인사를 기술자문그룹에 포함시켜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들 기술자문그룹의 활동기간은 일단 2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 논의의 결과가 2001년도 초에 발표되었다.

TAG의 5개 그룹은 Income characterization, Business profits, Consumption tax, Technology, Professional data assessment로 나뉘어 있다. Income characterization, Business profits TAG는 주로 소득세 및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1작업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Consumption, Technology TAG는 주로 소비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9작업반에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⁷⁾. 그리고 Professional data assessment TAG는 조세행정에 대하여 논의한 후 Forum on Strategic Management(FSM)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⁸⁾.

2.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 세목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가. 소비세¹⁰⁾

첫째,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거나 소비자의 소재지국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공급장소(place of supply)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서비스는 구별되어 과세되는데,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재화가 기존의 물리적 실체를 잃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와의 구별이 매우 어려워졌다.

OECD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논의에 업계 및

비회원국과의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인사를

기술자문그룹에 포함시켜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7) Technology TAG는 조세행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FSM에 보고하기도 한다.

8) FSM은 OECD 회원국 국세청장(head of revenue authorities)들의 협의체로서 조세행정과 관련된 전략적 경영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1997년에 구성되었다. 1999년에 14개국 대표로 구성된 Sub-group이 결성되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행정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9) 이들 문제점에 대한 자체한 논의는 『재정포럼』 2000년 4월호에 게재된 拙稿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의 동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되, 되도록 간단하게 열거하는 데 그쳤다.

10) 호주에서도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2000년 7월부터 도입함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셋째,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급장소가 달라지면 과세 여부도 달리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복합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공급장소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과세처리를 위한 서비스 유형을 분류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관세

1998년 5월의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현재 온라인 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거래수단에 따른 과세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동일한 내용의 상품이라도 매개체에 따라 전통적인 매개체의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전자적인 형태의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체제는 과세체계의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다. 소득세및국제조세

첫째, 인터넷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으로 물리적인 사업장소 즉, 외국 현지의 고정사업장 또는 자회사를 갖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전자상거래와 다국적 기업의 내부 통신망(intranet)의 개발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의 다수 구성기업이 마치 단일기업의 부서처럼 일하게 됨으로써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하기가 곤란해졌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디지털 정보의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business profits)으로 볼 것인가, 사용료소득(royalties)으로 볼 것인가 하는 구분이 중요해진다.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지국에서 비과세되는 반면, 사용료소득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라. 조세행정

조세행정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결정

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OECD회원국은 모두 광의의 부가가치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세무조사와 소득 추적이 곤란해지고, 셋째,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넷째, 탈중개화 현상(disintermediation)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taxing points)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 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3. OECD TAG 보고서

금년 2월에 발표된 OECD TAG 보고서는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소비자 과세 원칙의 확인, 서버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 정리, 사용료소득에 대한 구분, 징세 방안 등의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대체적인 결론을 본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소비세

OECD 회원국들은 1998년 10월 오타와 회의에서 디지털 제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국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소비자가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를 공급자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이 아니라 소비자국 정부에 납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의 정의에 대하여 이번에 OECD 보고서에서는 B2B거래의 경우 소비측 기업의 사업거점(recipient's business presence)을, B2C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usual residence)를 소비지로 보기로 하였다. B2B거래시 사업거점 결정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B2B거래의 경우에는 수입 법인에 의한 대리납부 내지는 신고납부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결정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2C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확인(verification) 문제가 아직 중요한

OECD TAG 보고서는 소비자과세원칙의 확인, 서버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 정리, 사용료소득에 대한 구분, 징세 방안 등의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웹사이트 자체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지만,
서버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과세당국으로서는 개인의 소비지 신고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이 업계의 새로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비지의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IP 주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논의 되었으나, 신용카드 번호에 의한 정보는 소비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고, 또한 이 방법이 채택된다면 신용카드 이외의 다른 방법을 지불수단으로 쓰게 하는 유 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IP 주소의 경우에는 가 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로서는 전자인증(digital certificate)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나. 소득세및국제조세

(1) 고정사업장의개념

소득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기 때 문에 전자상거래로 인한 그 개념의 수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오랫동안 논의 되어 왔다. 웹사이트나 서버가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번의 결론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논의의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웹사 이트 자체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지만, 서버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버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사람의 개입(on-site human intervention)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서버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람이 현지에 없어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서버는 컴퓨터 장치이기 때문에 당 연히 기존의 고정사업장보다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중요한 것 은 실제로 움직였는가 하는 문제로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고정(fixed)’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ISP와 같이 자신의 서버를 이용하는 다수의 기업을 위하여 통상적인 계약 을 대신 수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¹¹⁾. 끝으로, 서버가 광고와 같은 예비적·보조적인 기능에만 제 한적으로 사용된다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¹²⁾.

- 11) 종속적인 대리인(dependent agent)이란 이들 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독립적인 대리인(independent agent)이란 호스트 기업과 같이 자신의 서버를 이용하는 다수의 기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계약을 대신하여 줄 수 는 있으나, 배타적이지 아 니라 여러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 12) 영국은 서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주장하여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OECD 모델조세조약제 5조에 있는 고정사업장 개념의 수정으로 이어질 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용료소득

디지털 제품의 판매소득을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지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반면에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사용료소득에 비하여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과세되는 것이다.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지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반면에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사용료소득에 비하여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과세되는 것이다.

<표 2> 사업소득의 예

- 유형재의전자적주문(electronic order processing of tangible products)
- 디지털 제품의 전자주문 및 다운로드(electronic ordering and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 개정판과추가서비스(updates and add-ons)
-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정보 사용의 한시적 허용(limited duration software and other digital information licenses)
- 일회 사용을 위하여 다운로드된 디지털 제품이나 소프트웨어(single-use software or other digital product)
- 응용호스팅(application hosting-separate license or bundled contract)
- 응용서비스(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ASP 면허료(ASP license fees)
- 웹사이트호스팅(web site hosting)
- 자료저장(data warehousing)
- 컴퓨터 network를 통한고객지원(customer support over a computer network)
- 정보검색(data retrieval)
- 고급정보의 배달(delivery of exclusive or other high-value data)
- 광고(advertising)
- 온라인전문가서비스(electronic access to professional advice)
- 정보배달(information delivery)
- 대화식의웹사이트 구독(access to an interactive web site)
- 온라인쇼핑포털(online shopping portals)
- 온라인 경매(online auctions)
- 판매유도프로그램(sales referral programs)
- 콘텐츠구입거래(content acquisition transactions)
- 웹방송의시청·청취(streamed(real time) web based broadcasting)
- 전시사용료(carriage fees)
- 디지털 제품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웹사이트 구독(subscription to a web site allowing the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자료: OECD, "Tax Treaty Characterisation Issues Arising from E-Commerce," Feb. 2001.

사용 대상을 다운로드 받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목적이라도 기술적인 특성상 요즈음은 디지털 제품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구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아니라 사용목적과 대상이다. 즉 사용 대상을 다운로드 받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저작권(copyright)을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know-how)을 전수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표 2>와 <표 3>은 TAG 보고서에 따른 분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사용료소득의 예

- 다운로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electronic ordering and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for purposes of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 기술정보의 사용(technical information)

자료: OECD, "Tax Treaty Characterisation Issues Arising from E-Commerce," Feb. 2001.

(3) 이전가격

TAG 보고서에서는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적용시 사업장에 따른 이익의 귀속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단독 서버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복수 서버(multiple server)의 경우, 세 번째 유형은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personnel)이 주재하는 경우, 네 번째는 서버를 포함하는 고정사업장 내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서버가 고정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사업활동에 따른 위험부담 등은 모두 본부(head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정상가격원칙하에서 서버에 귀속되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에는

각각 고정사업장에서의 기여도와 위험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이익의 귀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이중과세의 방지

이번 TAG 보고서에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논의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과세목적상의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항구적인 주소지(permanent home), 통상적인 거주지(habitual abode), 국적(national), 국가간의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등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두어 과세목적상의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OECD 모델조세조약제4조에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에도 OECD 모델 조세조약 제4조에서 ‘실질적인 경영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로 법인의 소재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 실질적인 경영 장소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따라서 최고 경영진이 위치하는 곳,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는 곳, 법인 등록지, 대주주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곳, 이사회 멤버들의 거주지 등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은 과거와 달리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화상회의(video-conference) 등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하겠다.

다. 조세행정

조세행정에 있어서는 오타와 회의에서 채택된 집행 방안(implementation options)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한 납세자 서비스의 개선, 납세자 신원 확인을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조세 관련 정보의 형식 등에 관한 국제적 표준화,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강구 등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소비세의 징세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신고납부(self-assessment)/대리납부(reverse charge), 국외사업자의 등록(registration of non-residents), 공급지과세와 양도(tax at source and transfer),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withholding

과세목적상의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B2C거래에 있어
중립적인 제3자 또는
징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by financial institutions)의 네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B2B거래는 신고납부/대리납부, B2C거래의 경우는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B2B거래의 경우에는 집행상 신고납부/대리납부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B2C거래에 있어 국외사업자의 등록방안은 ‘단순화된 잠정적 접근 방안(Simplified Interim Approach)’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소액 사업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고, 등록절차를 표준화시키며 동시에 단순화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방안(SIA)에 따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은 허용해 주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B2C거래에 있어 중립적인 제3자(Trusted Third Party) 또는 징세 소프트웨어(global tax calculation software)를 이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조세 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실용단계에 들어가 있으나, 국제적인 거래에서 여러 나라의 제도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아직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2000년도에 실시된 OECD의 서베이에 의하면 여러 회원국의 과세 당국은 IT 기술을 이용하여 납세자 서비스의 향상과 징세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표 4> 참조). 종이로 된 세무양식이 전자적인 파일 형태로 바뀌고, 납세자가 세무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던 세무신고(tax return)는 납세자의 여러 가지 질문에 즉각 답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예: touch screen)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콜센터, 인터넷 등의 설비가 국세청 직원들을 대신하여 납세자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편과 요구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프로그램들도 도입되고 있다. 분리된 서비스로 인하여 야기되는 납세자와의 빈번한 접촉 횟수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통합서비스(one-stop)를 도입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조세행정을 보다 잘 융화시키기 위한 노력, 납세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의 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회원국들간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의 공유, 관할지의 증명에 관한 기술적 연구, 회원국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납세 자료의 종류 및 형식 표준화, 납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협력, 업계(business)로 하여금 납세 순응비용을 줄일 수 있

<표 4> 조세행정상의 변화 추세

기존의방식	새로운방식
종이에의한의사소통	전자적의사소통
세무보조인	시스템의보조에의한독자적세무보고
현금·수표로납부	전자자금이체
개별인적응답	자동응답
후속적인프로그램	선도적인프로그램
분리된서비스	통합서비스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eb. 2001.

미국의

‘인터넷조세 면제법’의
기본정신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
모든 경제 행위에 대한
중립적인 과세이다.

는 IT 기술을 채택하도록하는 지침의 작성 등을 그예로 들 수있겠다.

III. 맺음말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의 속성상 조세제도의 정비는 국제적인 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나 미국, 호주를 비롯한 몇몇 선진국의 과세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모두 1998년의 오타와 회의에서 채택된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 따르고 있다. OECD에서의 논의 결과는 앞으로 조세조약 등의 국제규범에 있어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국제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전면적인 세법 정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ACEC(2000), ATO(1999) 등의보고서에서도 성급한 세법의 정비가 오히려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향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상황전개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제정비를 서두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세법을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방안 및 IT 기술의 조세행정상의 응용 등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은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법인세 감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면과제라고 하겠으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OECD의 논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세법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¹³⁾.

끝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문제이다. 요즈음 전자상거래의 초기 단계에서 산업지원적인 측면에서의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논의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흔히 미국의 ‘인터넷 조세 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세제지원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ITFA의 기본정신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 모든 경제 행위에 대한 중립적인 과세이다. 즉 ITFA는 각 주 및 지방정부에 의한 다중적(multiple) 과세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discriminatory) 과세 및 새로운 세금의 부과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중립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줄 경우,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에도 계산대에서 온라인 거래의 형태를 취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유발하여 유통구조에 왜곡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가 형태상으로 정보 제공 및 주문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배달 및 결제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다를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간접세로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거래의 투명화가 전자상거래업자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소득·법인세의 감면을 통하여 완화시켜야 할 문제이지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통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셋째로는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제감면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감으로써 정보화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은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법인세 감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13) 국제논의를 우리세법에 적용하여 그 개정 방향을 살펴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홍범교·연태훈(2000) 제4장 4절 참조.

참고문헌

- 홍범교, 「전자상거래관련조세제도정비에관한국제논의동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0, 4.
- 홍범교 · 연태훈, 『전자상거래국가전략수립을위한 분야별정책연구: 조세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6.
- Advisory Commission on Electronic Commerce, Report to Congress, April 2000.
-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and the Internet: Second Report*, December 1999.
-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DAF/FE/CFA(98)38/REV3, July 1998.
- _____, “Clarific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Definition in E-Commerce: Changes to the Commentary on the Model Tax Convention on Article 5,” Dec. 2000.
- _____, “Tax Treaty Characterisation Issues Arising from E-Commerce,” Feb. 2001.
- _____, “Attribution of Profit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Feb. 2001.
- _____, “The Impact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on the Application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a Tie Breaker Rule,” Feb. 2001.
- _____, “Report by the Technical Advisory Group on Monitoring the Application of Existing Treaty Norms for the Taxation of Business Profits (Business Profits TAG),” Dec. 2000.
- _____, “Consumption Tax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Feb. 2001.
- _____, “Report by the Consumption Tax Technical Advisory Group,” Dec. 2000.
- _____, “Report by the Technology Technical Advisory Group,” Dec. 2000.
- _____, “Tax Administration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eb. 2001.
- _____, “Report by the Professional Data Assessment Technical Advisory Group,” Dec. 2000.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이자료는한국조세연구원이 2001년 5월 28일 제32차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장기세제운용방향」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I. 배경

1. 그 동안의 세제운용 평가

- ☐ 1950년대 조세정책은 재정수입의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세제를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
- ☐ 1970년대의 조세정책은 세수 확보와 저축, 투자 및 기업활동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경제의 안정과 부와소득의재분배기능을지향
- ☐ 1975년:종합소득세제, 1977년: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도입
- ☐ 1980년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가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두어짐에 따라 조세정책도 세제의 중립성을 통한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주안점이 두어짐.
- ☐ 1990년대 초·중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조세형평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운용된 조세정책은
- ☐ 19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의 극복,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 생산적 복지 구축 및 시장경제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등 조세의 효율성과공평성추구에중점
- ☐ 이상과 같은 지속적인 세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과세기반 약화,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불형평,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 등 미비점존재

<최근 3년간 세제운용>

- ☐ 지난 3년간 조세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복지구현에최우선을두고운용
- ☐ 원활한구조조정및우리경제의경쟁력강화지원

- 금융·기업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세제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조조정을 뒷받침
- 중소·벤처기업 진흥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통합하고, 정보화투자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을 유도
- 세부담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
-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가전제품 등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으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근로자 내집마련 지원 등 재산형성을 지원
-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 실시, 부가가치세과세 특례제도의 개편, 강화된 상속·증여세 등을 통하여 고액재산가의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 조세지출예산제도,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조세감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정비
-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여 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자산재평가세의 종료 등

으로 세제를 간소화

2.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수립의 필요성

- 경제위기 이후 세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세부담 관리 필요
- 복지지출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
-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세 부담이 불가피
-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제 필요
- 외국법인과 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세 경쟁심화
-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등으로 세원 및 세정의 변화
-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크게 변화됨에 따라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실업자가 증가한 반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전문직종 확대 등 소득분배 구조에 커다란 변화
- 따라서 조세환경의 변화, 주요국의 세제개편동향, 세원별 세부담을 고려하여 중장기(향후 5~10년) 조세개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조세의 효율성 제고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
- 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 및 세정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
-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국민생활·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3. 주요국의 세제개편동향

- 최근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소득·법인세 경감을 골자로 세제개편을 단행
- 독일은 2005년까지 최고 51%의 소득세율을 42%로 인하하고, 30 40%의 법인세율도 25% 단일세율로 인하

<표 1> 독일의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하 내용

(단위: %)

	2000	2001	2005(예정)
법인세율(유보소득)	40	25	25
법인세율(배당소득)	30	25	25
소득세율(최저소득)	22.9	19.9	15
소득세율(최고소득)	51	48.5	42

주: 독일은 법인세·소득세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일본은 5단계의 소득세율(10, 20, 30, 40, 50%)을 4단계로 조정하고 세율도 인하(10, 20, 30,

37%)

- 미국은 향후 11년간 1조 3,50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소득세 세율을 3%씩 인하. 현행 최고세율이 55%인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2009년에는 폐지)

<표 2> 미국 상원의 소득세율 인하 계획

(단위: %)

	신설	현행 28	현행 31	현행 36	현행 39.6
2001	10	28	31	36	39.6
2007 이후	10	25	28	33	36

- 주요국의 최근 세제개편은 생산요소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
- 독일은 EU 내에서 자본·노동의 유치, 생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
 - EU 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현 상황에서 독일의 자본·소득에 과세 완화는 주변국가들의 세율 조정으로 이어지는 조세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소득·소비과세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소득세 최고한계세율: 65%, 부가가치세세율: 5%)
 - 부가가치세 인상 및 소득세 인하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연방세입의 대부분을 소득과세에 의존하고 있는바 최근의 재정흑자세를 계기로 감세를 단행

- 감세의 주된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나 소비세 강화 및 소득세 인하라는 ‘근본적 세제개혁’의 논의가 일부반영

□ 주요국의 세제개편이 앞으로 생산요소(노동·자본)에 대한 조세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의 세제개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노동·자본 과세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세경쟁을 당장에 우려할 염려는 없음.

○ 향후 외국의 세율 수준,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재정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II. 중장기 세제운용의 기본방향

1. 정책 목표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뒷받침

○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정비

○ 소득, 자산, 업종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경제의 개방화, 지식·정보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제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는 세제

○ 생산·근로·투자의욕을 제고시키는 세제

○ 환경친화적인 세제

□ 세제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개편하여 징세·납세협력 비용 축소

○ 목적세 정비 등 세법 체계를 간소화

○ 알기 쉬운 세법으로 전환

□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운용으로 국민 신뢰 확보

○ 전자신고 등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

○ 공평과세 확보 및 과세자료 축적을 통한 선진세정 구현

○ 정보공개 등 투명한 세정운영

2. 세원간 적정 조세부담(optimal tax-mix)

- ☐ 국가간 세원이동이 용이한 자본·고급인력에 대한 세금은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자본소득에 대한과세는 강화
- 자본소득 : 외국자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므로 세부담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는 지양
- 근로소득 : 국가간 유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고급전문인력의 세부담을 경쟁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
- 소비과세 : 전자상거래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 노력필요
- 토지 및 자본소득 : 효율성·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바람직

III.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

1.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가. 조세부담률의 적정화

<조세부담률 추이>

- ☐ 조세부담률이 최근 증가하고, 사회보험비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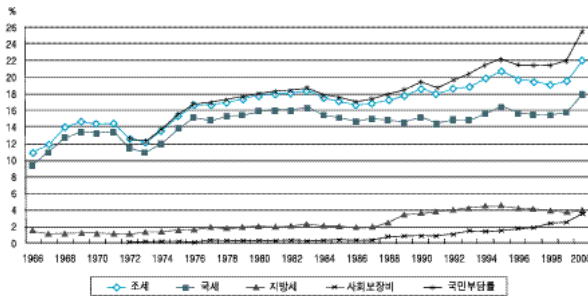
하여전체적인국민부담률은 증가 추세

- 조세부담률은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 : 1970년대 15% 수준, 1980년대 18% 수준, 1990년대 19% 수준, 2000년 22.0%
- 사회보험은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세가 지속
 - 연금 보험료율 인상, 가입대상확대등에 기인
- ☐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멕시코(13.2%), 일본(17.5%)보다는 높고, 미국(22.1%)과는 비슷하고, 여타 OECD 국가보다는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평균조세부담률(1998년 27.6%)
-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편차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유럽 각국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미국과 일본은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사회보장비를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재정수요 조달 방안>

- ☐ 대규모 감세나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림 1] 조세부담률(1966 2000)



- 건전재정 기초의 조기정착은 재정의 경제안정 기능을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
 - 항구적인 감세조치는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의탄력적운용을저해하므로 곤란
-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사회보장과관련된국민부담이증가할것이므로인위적인증세는커다란부담
 - 국제간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 추세 등 인위적인 증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감축으로대처

나. 세원별세부담구조의합리적조정

- 직·간접세 위주로 세금의 사회후생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왜곡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세부담 평가지표를 직·간접세 위주에서 세원별

비중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 소득·소비·재산과세의비중을 OECD 국가들을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하고 동일세원 내에서도부담의 합리성을추구
- 소비과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조세구조는 일단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
- 소비과세 체계의 정비, 재산세 부담의 성격 조정, 소득과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조세의 효율성·형평성을 제고
- 생산요소에 대한 조세경쟁으로 재분배기능이 제약받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 형평성을 추구
- 자본의 국가간 이동 및 세대간 자산이전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수준의 금융자본과세 및 상속·증여과세를유지
- 근로자의 국가간 이동은 유럽과는 달리 비탄력적이므로 소득과세의 기반을 확대하되 세부담의 누진도 완화
- 각 세원 내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수평적 형평성을도모

>> 기획

다. 국세와지방세의합리적조정

□국세 · 지방세 재정조정현황 (2001년예산 기준)

○국세 · 지방세 세입비중은 80:20이나 지방재정 조정 후의중앙 · 지방재원의비중은 46:54임.

<국세 · 지방세>		<지방이전재원>		<가용재원>	
국 세 95.9조원	-	◇일반자치단체 · 지방교부세 24.2조원 · 지방양여금 10.3조원 · 국고보조금 4.4조원		중앙정부 54.9조원	
80 : 20		◇교육자치단체 · 교육교부금 16.8조원 · 교육양여금 13.0조원 · 국고보조금 3.6조원		46 : 54	
지방세 23.5조원	+			지방정부 64.5조원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확충되고 중앙 · 지방간 재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세 · 지방세 조정 방안을 모색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지방정부 자원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등

□국세 및 지방세정책과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전체 조세부담을 고려한 조세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국세 · 지방세정책협의회를 설치 · 운영

○국세 및 지방세의 신설 · 조정 · 폐지, 중앙 · 지방정

부간재원조정제도의변경등에관하여사전협의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 전환

가. 과세기반확대

1)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 확대

□ 현행 맞문제점

- 소득종류간 · 계층간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 시행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비과세 · 감면저축이 실효성저하요인으로 작용
- 총 금융저축 중 비과세 · 감면저축의 비중이 약 29%에이름

<표 3> 금융저축 규모(추정)

(2000말기준, 주식 제외)

	금액(조원)	비중 (%)
○법인저축	540	48.2
○개인저축	580	51.8
- 정상과세	252	22.5
- 10% 저율과세	97	8.7
- 비과세	231	20.6
합 계	1,120	100.0

□ 운용방향

-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금융 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을 하향조정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세원의 확대추이를 보아가면서 원천징수세율의점진적인 인하를 검토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세금우대저축의 축소

- 다만, 저소득층 및 특수목적의 비과세저축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

예): 생계형 저축, 우리사주 배당, 농 · 수협 등 출자금

2)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형식상 종합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비과세 · 분리과세로 과세기반이 협소
- 대부분의 근로소득, 이자 ·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 상당부분의 유가증권양도차익과 부가급여(fringe benefits)에 대해 비과세

○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2000년 18.9%)이 외국에 비하여 크게 낮아 재정수요 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

※ 총국세 중 소득세 비중: 미국 74.2%, 영국 33.8%, 일본 36.9%

□ 운용방향

- 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득세제를 중장기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 체계는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 2단계로 각종 비과세 · 분리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 추이를 보아가면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3) 상속 · 증여에 대한 완전 포괄과세주의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별 포괄과세주의의 도입으로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 · 증여에 대하여 상당부분 대처가 가능하나
- 세금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완전 포괄주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운용방향

-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를 이유로 한 위헌 시비 외에도 납세자와의 마찰 등 실무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지난해 도입한 유형별 포괄주의의 집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 등을 검토

4) 부가가치세 면세 · 영세율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방위산업, 도시철도건설용역, 농 · 어 · 축 · 임업용 기자재, 관광산업 등에 영세율 적용

>> 기획

○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영세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세의 중립성·효율성·공평성·단순화에 역행

○ 일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면세대상 용역 중 민간 부문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 운용방향

○ 영세율은 수출·외국항행용역 등으로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면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국한하여 적용

○ 특정 산업부문 지원은 단계적으로 면세 또는 과세로 전환

나. 조세감면제도정비

1) 비과세·감면 축소 및 국제적 조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조세감면규모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각종 정책 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 2000년 기준 내국세 대비 14.6%(GDP의 2.5% 수준)에 이름.

○ 복잡다기하고, 대규모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의 위축, 세제의 중립성 훼손 및 복잡성을 가중

- 조세감면의 항구화, 기득권화 현상도 존재

□ 운용방향

○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정비·축소 추진

○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 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 등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

○ 중복·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

○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 방지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정착화

□ 현황 및 문제점

○ 조세감면은 간접적인 형태의 정부지출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 조세감면에 대한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조세감면 통계작성 및 공표
- 그러나 조세감면 분류가 세출예산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아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

○ 전체 세목에 대한 조세감면 통계가 미흡
- 현재 관세 및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은 내국세에 대해서만 감면통계를 작성

□ 운용방향

- 조세감면통계 작성 대상 세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 예산과 동일하게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사전 추정 을 시도
- 장기적으로 조세감면의 분류를 세출예산 분류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

다. 자영업자과표양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등의 도입으로 상당히 제고되었으나근로소득자에비하여아직미흡한수준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과표양성화 지속을 위한 다양한 접근 이 필요

-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영수증에 부가세액 별도 표시제일부시행

□ 운용방향

- 제도적으로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래관행 및 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인 지원
 -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통합전산발매시스

템 등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는 제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
- 장기적으로 간이과세 폐지를 통해 정상과세

3. 경쟁력 있는 세제

가. 기업과세제도의개선

1) 경쟁력을확보하도록 법인세율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의 자본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부 선진국에서법인세율을인하하는 경향
 - OECD 회원국 최고 법인세율의 평균이 41.6%(1986)에서 31.4%(1999)로 인하

□ 운용방향

- 우리 법인세율(28%)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
- 주요 경쟁국의 세율 변화 추세 및 법인의 세부담 추이에 대하여 면밀하게검토
 -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의 법인세율 유지

>> 기획

- 각종 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이 확대되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2)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연구개발에 대한 각국의 조세지원경쟁이 심화
- 현행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명목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상위에 속하나 지원제도의 활용도는 다소 미흡

☐ 운용방향

- 백화점식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기술개발 핵심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 절차 및 양식을 간소화

3) 상시적 구조조정지원세제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금융시스템 등 기업구조조정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 제공

- 일부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고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발생시 지원 미흡

☐ 운용방향

-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상시 체제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지원세제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
 - 한시적 제도 중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화

4)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분식회계 관행으로 막대한 투자자 손실과 국가 신인도 하락
- 임의상각제도하에서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고,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과 괴리가 발생

☐ 운용방향

- 비용누락, 가공이익 등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세제상의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분식회계 근절을 유도
- 기업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회계와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하여 강제상각제도의 도입을 검토

5) 파트너십(Partnership) 과세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전문지식집단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파트너십 형태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파트너십을 법인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제도가 있지만,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운용방향

○ 전문지식집단의 창업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검토

6)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기업이 납세단위
 -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거의 대부분 보유한 기업집단은 경제적 동일체로서 단일 과세단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 기업의 경영전략상 본사와 사업부제에 대한 선택에 있어 조세가 중립적일 필요
 - 미국, 영국 등 다수의 OECD 국가들이 기업집단

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연결납세를 인정

□ 운용방향

○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기업집단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나. 소득·상속과세의 적정화로 근로의욕, 생산의욕 고취

1) 근로소득과세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 각종 세수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세수비중은 주요 외국에 비하여 절반 이하 수준

<표 4> 근로소득세 부담 국제비교(1997년 기준)

(단위: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근로소득세 비중	총조세 대비	6.0	23.9	20.8	16.3	12.3	12.4
	국세 대비	7.6	41.2	21.8	18.6	15.0	20.5
	소득세 대비	35.8	62.5	83.8	76.1	87.9	59.5

-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주로 중산·서민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결과 과세자비율이 낮은 등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낮은 반면,
 - 근로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아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계층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과중하다는 비난 제기

<표 5> 과세자 비율(1999년 기준)

(단위: %)

	한국 ¹⁾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과세자비율	54	83	80	80	83

주: 1) 우리나라의 과세자비율이 낮은 이유는 높은 공제로 면세점 수준이 높기때문임.

○가구당 국민소득 대비 면세점 비율이 31.0%로 미국(21.8%), 영국(13.8%), 일본(28.2%)보다 높음.

<표 6> 가구당 국민소득 대비 근로자 면세점 비율

(자국통화기준, %)

	한국(1999)	미국(1996)	영국(1996)	일본(1998)
가구당국민소득(①)	4,082만원	94,200\$	39,144£	12,828천엔
면세점(②)	1,267만원	20,569\$	5,418£	3,616천엔
비율(②/①)	31.0	21.8	13.8	28.2

주: 가구당국민소득은 1인당국민소득을 4배한수치(4인가족기준)

□ 운용방향

○급여계층별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 검토

2) 상속세 과세체계의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현행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은 실제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고, 친족 내부의 부

의 분산에 유리하며,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운용방향

○상속관행, 부동산등기제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유산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검토

다.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 현황 및 문제점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둔 현행 부동산세제는 변화된 부동산시장여건과 괴리되어 운용되는 측면이 있음.

○투기 억제·비근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차원에서 고세율구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정책목적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 다양하게 운용

○부동산 거래시 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기준시가에 기초한 과세를 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음.

○보유단계 과세 강화에 따른 조세저항, 취득시점과세의 징세편의 등으로 보유단계과세비중이 낮음.
-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보유단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과제는 아직도 미결 과제로 남아있음.

□ 운용방향

- 과거 개발시대에 마련된 부동산세제를 달라진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정상화
 - 양도소득세의 고세율·다감면구조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 개편하여 부동산관련 세제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보유과세(재산·종토세)를 강화하고 취득과세(취득·등록세)를 완화
 - 법인과 개인간 세부담의 불형평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원시취득분에 대한 취득·등록세면제를 고려
 -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토지세제 도입 등 종합토지세의 근본적 개편 방안 검토
 - 조세마찰이 큰 보유세 강화방안만으로는 취득단계 과세 완화에 따르는 세수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수보전 대책 마련 필요

라. 외부불경제축소를 위한 세제

1) 특별소비세를 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외부불경제 축소기능이 석유류 일부에 국한되어 미흡

-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로의 이원화에 따른 세제의 복잡화

- 소비패턴의 고도화에 부합하고, 산업 및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며, 근거과세를 저해하는 과세대상에 대한 개선 요청

□ 운용방향

- 석유류에 대한 지속적 과세 강화 및 환경오염물질 과세를 통한 환경세·소비억제적 조세로서의 기능 강화

-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과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의 과세 제외

-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세제로서의 면모 일신 필요

2) 주세·담배세의 Sin Tax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주류와 담배는 국민건강에 유해하고 음주운전사고와 의료비 증가 등 각종의 외부불경제를 통해 ‘시장의 실패’ 초래

- 담배 및 고알콜주의 소비는 세계 최고수준, 가격은 최저수준으로 흡연 관련 조기사망,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

>> 기획

□ 운용방향

- 소비억제를 유도하는 과세체계로의 정비
- 제조규제는 완화하되 유통규제는 강화하여 경쟁 제고 및 무분별한 주류소비의 억제를 유도
- 담배 관련 세부담의 인상과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마. 국제기준에 적합한 세제

1) 유해조세감면제도 및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투자 유치 위한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 국제 자본거래를 왜곡시키고 각국의 과세기반을 잠식
- OECD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유해조세감면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

□ 운용방향

-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
 - 국내 조세지원제도 중 유해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유해성 제거
 -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유해조세감면제도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주변의 경쟁국들이 동참하도록 노력

○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 정비

- 조세정보교환,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등에 대한 보고제도 및 거래감시시스템의 강화
- 해외 간접투자소득의 국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 도입 검토

2)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까지 관련 세제 정비 미흡
- OECD에서는 현재 소비지의 확인, 기술에 기반을 둔 징세구조의 구축, 제도의 간소화, 조세조약규정의 개정, 납세자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한 논의 지속

□ 운용방향

- OECD, WTO 등에서의 논의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과세제도 정비
- 전통적 상거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On-line · Off-line 간 차별적 세율 적용은 부적절
 -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별도 수단 모색

4.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

가. 목적세정비등조세체계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목적세는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세감면에서 세금을 부가하는 등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의 주요 요인
- 또한 목적세는 재정의 용도를 한정함으로써 신축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
- 목적세 세수는 2001년 예산 기준으로 17조원(총국세 대비 17.7%)이며 이는 다른 선진국(일본 1.1%, EU 1% 미만)에 비해 높은 수준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계
적용시한	영구세	2003.12	2004.6	-
세수 규모(조원)	3.6	11.0	2.4	17
국세대비비중	3.8%	11.4%	2.5%	17.7%

주: 지방교육세 3.3조원 제외

☐ 운용방향

- 교통세를 여타 에너지관련 세제와 통합하는 방안 등 목적세의 단계적 정비 필요
-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은 억제

나. 알기 쉬운 세법, 편한 납세

1) 알기 쉬운 세법

☐ 현황 및 문제점

-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증대시키고, 세금에 대한 불만을 야기
 - 반면 현행 세법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형태라는 비판
-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의 구축이 필요

☐ 운용방향

- 세법간 통일성, 세법의 용어, 표현방법 등 세제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
- 다수의 국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을 우선적으로 개편하고 이후 법인세, 상속증여세를 정비

2) 양식 및 납세 절차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에서 신고납부로 전환
 - 이에 부합하는 양식의 축소, 절차의 간소화 필요
- 다수의 중복적인 양식과 불필요한 절차가 상존

>> 기획

□운용방향

-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납세절차 및 양식 등을 간소화

5.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운동

□현황및 문제점

- 세정 개혁을 통해 물적·정보·제도적 인프라는 이미 구축
 -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제도 및 조치들을 장기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
 -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역점

-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존재
 - 공평과세 실현, 과세자료의 축적, 성실납세 환경 조성 등에 대한 개선 필요

□운용방향

- 정보기술 활용 및 납세자별 소득·지출에 대한 자료 구축
 - 거래내역이 파악되는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투자 확충으로 세정 투명성 제고

- 조세행정의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구축

-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적극 차단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강화

-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항구적인 납세자권익보호기구로 제도화 등

폴란드의 조세개혁

박 창 균 초청연구위원(cp19@kipf.re.kr)

폴란드의 조세체계는 1990년대 동안 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동구의 다른 체제 전환국들의 조세체계에 비해 그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격심한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산으로 간주되는 광범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이고도 광범위한 조세수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복잡하고 차별적인 조세 구조가 경제 주체의 동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해쳤다거나, 폴란드 경제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해외자본의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에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과중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가 노동공급을 저해하고, 세법 중에 산재하는 각종 예외 내지 특별 조항들이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들로부

터 자발적인 납세순응(compliance)를 이끌어 내는데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체제전환 과정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9년부터 광범위한 조세개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OECD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행 폴란드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본 뒤, 1999년 이후 제안되거나 시행중인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I. 조세개혁에 대한 사회·경제적 필요성

폴란드에서는 정부수입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상회할 정도로 정부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큰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지만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국민 경제를 통제하던 계획경제 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높은 정부부문의 비중은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감소한 동구의 다른 체제 전환국들과는 달리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주로 아래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관대한 운영으로 촉발되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버팀목이다. 퇴직연금(old-age pension)의 수혜액이 물가 수준에 연동되어 있으며, 체제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령의 실업자들을 별다른 차별 없이 퇴직연금 제도에 편입시켜 법에 규정된 연령보다도 5세 정도 이른 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다.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또한 연금 수혜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혜액이 동구나 중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아서 재정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총 연금 수혜자는 1990년 700만명에서 1998년 950만명으로 35% 증가하여 연금 납부자 대 연금 수혜자의 비율이 1.4대 1에 이르러 OECD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퇴직연금의 수혜액도 1989년 평균 임금의 53%에서 1998년에는 67%로 상승했다. 연금지출로 인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세가 계속 상승하여 순임금에서의 비중이 1981년 25%에서 1998년 45%까지 상승했다. 그 결과, 폴란드의 1998년 공적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해 OECD 평균인 6.5%를 훨씬 상회한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현행 수준의 공적연금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특히 장기적 경제 발전의 제도적·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의 증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제도의 정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으로 발생하는 국방비 지출의 증가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고려하면 조세와 재

폴란드의 조세체계는 1990년대 동안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동구의 다른 체제 전환국들의 조세 체계에 비해 그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피할 수 없었다.

2000년에 발표된 폴란드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영 지침은 연구 개발 예산의 확충,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의 증대, 농촌 구조조정 촉진에 재정정책의 우선 순위를 배당하여 집중투자하는 반면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조절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조세정책의 측면에서는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안정적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II. 폴란드 조세제도의 특징

지난 10여 년간 폴란드에서는 계획경제하에서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국영 기업으로부터 정부로 흘러가는 현물 중심의 자원 이전 시스템이 민간 부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대체되면서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각종 조세제도가 형성되어왔다. 1989년에 법인소득세, 1992년에는 개인소득세가 도입되었고, 1993년에는 종래의 판매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모든 수입 물품에 부과되던 일반수입세(一般輸入稅)를 폐지하였으며, 1999년에는 공적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정비되었고,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지난 10여년간 폴란드에서는 계획경제하에서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국영 기업으로부터 정부로 흘러가는 현물 중심의 자원 이전 시스템이 민간 부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대체되면서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각종 조세제도가 형성되어왔다.

재정수입 배분에 대한 명시적인 원칙이 확정되었다. 조세수입의 구조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가 각각 1/3씩 차지하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개인소득세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양자는 분리되어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된다. 1999년을 기준으로 노동소득은 소득 구간에 따라 19, 30, 40% 세 단계의 누진적 세율로 과세되나, 실제로는 각 단계별 과세 구간이 매우 넓어서 약 75% 정도의 납세자가 가장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근래에 와서 많이 줄기는 했으나, 인적 공제, 주거용 건물의 건축 비용 공제, 사회보장세 납부 세액에 대한 공제, 장애자 공제,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등 각종 공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부부간의 소득은 합산해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 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22%로 유럽 연합의 기준에 근접되어 있으나, 상당히 많은 수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4%와 7%의 할인 세율이 부과되며, 농산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소득세는 ‘고전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모든 법인소득은 일차적으로 과세되고 배당된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 형태로 다시 과세된다. 1999년의 법인세율은 34%로 1996년의 40%보다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중동구(中東歐)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높다.

법인소득세 또한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예외 조항과 감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¹⁾. 사용자와 노동자가 거의 같은 비율²⁾로 분담하는 사회보장세는 퇴직연금과 장애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이에 더하여 실업보험과 기타 노동 시장 정책의 실시를 위해 세전 총임금의 2.45%가 별도로 과세된다. <표 1>은 이상에서 논의된 폴란드의 현행 조세체계를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표 1> 폴란드 조세체계 (1999년)

	세율 ¹⁾	세원	공제와 감면	GDP 대비세 ³⁾
개인소득세	19, 30, 40	개인소득	주택투자, 기부, 연금, 교육비, 의료비, 부부합산신고	5.6
법인소득세	34	법인소득	투자, 광고비지출, 업무추진비등	2.5
부가가치세	22, 7, 4, 0	재화와 용역의 판매 ⁴⁾	비가공농산물, 아파트임대, 토지매매	12.4
사회보장세	36.6 ⁵⁾	개인소득 ⁴⁾	일부직업종사자 ⁵⁾	10.2

주: 1) 단위: %

2) 연간매출액 80,000 주어티(zloty) 이하의 사업자는 면세

3) 사용자 부담분 17.9%, 노동자 부담분 18.71%.

4) 농업종사자, 판사, 검사 면세대상.

5) 자영업자는 추정소득을 근거로 과세.

자료: Ministry of Finance, Poland. Lenain and Bartoszuk(2000)에 서재인용.

1) 수출 진흥, 신규 기업, 수산업 부문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액 감면을 허용하고, 경제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한다.

2) 각기 세전총임금의 17.9%와 18.71%를 부담한다.

현행 폴란드 조세체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보장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구권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체제전환기의 혼란 속에서도 임금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세는 회피가 어려워 세수 확보의 가장 용이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둘째, 조세수입이 일부 세목에 편중되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가 전체 조세 수입의 1/3씩을 담당하고, 여타 재산세, 상속세, 환경세 등이 조세 수입에 기여하는 바는 아주 미미하다. 세원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한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일부 제한된 세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조세수입의 약 90% 가량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투입되어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넷째, 조세 체납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1998년의 경우 전체 체납액은 150억 주어티(zloty)로 국내총생산의 3%에 이른다. 대부분의 체납은 사회보장세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민영화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국영 기업체, 광산, 철도, 철강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연금제도 운용에서 수지 압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섯째, 각종의 조세감면제도가 방만하게 시행되고 있다. 조세제도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전제 위에 차분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타협을 거치면서 개인소득세법은 30여 차례, 법인소득세법은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결과 개인소득세법에는 125종의 감면 조항과 10종류의 소득공제, 14종의 세액공제 조항이 포

1997년의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90%가 각종 소득공제를 신고한 반면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39%만이 그 혜택을 누렸다.

함되어 있다. 더구나 많은 공제 항목들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거주용 부동산의 구입과 유지에 따르는 비용의 공제,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의 공제는 부유층에 의해 유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공제제도들이다. 그 결과로, 1997년의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90%가 각종 소득공제를 신고한 반면 최저세율을 적용 받는 납세자의 39%만이 그 혜택을 누렸다. 법인소득세법 또한 많은 예외와 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40종의 투자비용 공제, 63종의 특별 감가상각 조항, 경제특구에 대한 각종 면세조치 등이 법인소득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세수 손실을 가져온다.

1. 조세와 노동 시장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뺄기³⁾ (marginal tax wedge)가 노동의 수요와 공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폴란드의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뺄기는 약 45%로 매우 높다. 1999년 현재, 평균적인 임금 소득자가 부담하는 개

3) 한계조세뺄기는 총 임금소득과 고용자 부담분 사회보장세의 합인 총 노동비용의 증가분과 이에 수반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증가분의 비율로 정의된다.

한 계산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 취업할 때 직면하는 실효한계세율이 120%에 달하기도 한다.

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전체 임금소득의 42%이며 한계세율은 44%에 달한다. 높은 한계 세율과 조세 빼기는 폴란드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 큰 규모로 존재하는 지하경제⁴⁾가 제공하는 대체 고용 기회와 맞물려 노동공급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업자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 빈곤층에 대한 최저 생계비 보장, 실업보험 급여, 현물 중심의 공적 부조, 육아 비용 보조 등의 사회보장 혜택은 수혜자의 고용 여부 내지는 소득 수준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실업자가 재취업하거나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 그 혜택이 상실되거나 고용에 따른 소득의 증가에 따라 납세의 부담까지 추가될 수도 있어서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예로, 한 계산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 취업할 때 직면하는 실효한계세율이 120%에 달하기도 한다.⁵⁾

1999년부터는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되던 질병수당의 지

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혜택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또한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회보장세를 강제 저축의 형태를 가진 개인별 연금 계정(individual pension account)으로 대체하고 납부금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관리한다. 새로운 연금제도하에서는 본인의 적립분이 누적되어 가는 것을 직접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사회보장세를 세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특수한 형태의 장기적 저축으로 인식하므로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조기 퇴직을 억제하여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조세와 외자 유치

빈약한 국내의 자본 축적을 고려하면 해외 자본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유치는 성공적인 체제 전환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법인소득세, 재산세, 관세 등의 조세제도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세제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폴란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에 대하여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인 조세 환경은 해외 자본의 성공적 유치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 우호적 태도, 양질의 인력자원, 정치적 안정 등이 더욱 중요한 요인들이다. 해외 자본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조세정책은 외자 유치는 목적의 달성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국내 자본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은 자원 배분의 왜곡

4) 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5~20%에 달한다는 믿을 만한 추정치가 있다.

5) 실업자가 취업하여 벌어들이는 마지막 1원의 소득 때문에, 상실되는 사회보장수혜액과 새로이 부가되는 조세부담의 합이 1.2원임을 의미한다.

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자본소득과 조세

자본소득은 과세 단계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소득은 34%로, 개인소득세하의 배당소득은 20%로 과세되는 반면, 이자소득은 면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은 일반 소득으로 분류되어 누진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자 비용 지급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 허용은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의 재원으로 증자나 유보이익보다는 부채를 선호하게 만들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주식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한정된 간접금융시장의 재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 속에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은 대기업이나 기존의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입 배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중앙 집권적 전통이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세 수입 배분과 재정 지출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조세 수입원을 거의 가지지 못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위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지출 측면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나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공업의 선정과 육성 등에서 지방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인 조세 환경은 해외 자본의 성공적 유치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 우호적 태도, 양질의 인력 자원, 정치·적 안정 등이 더욱 중요한 요인들이다.

으로 나아가고 있다.

5. 조세와 부동산시장

주거용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임대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개인소득세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1인 가족을 위한 주거용 건물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구입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기존의 주거용 부동산을 증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비용공제나 세액공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실증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제 제도들이 주거용 부동산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보이나, 이들이 주로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 분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주거용 부동산의 신축과 개축에 적용되는 임대조치에 반해 기존의 부동산 거래에는 비교적 고율

각종 공제제도들이 주거용 부동산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보이나, 주로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분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의 인지세가 부과되는데⁶⁾ 그 효과가 서로 상충하는 두 정책의 공존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어렵다.

6. 조세행정

폴란드의 조세행정은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탈세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납세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하여 신고소득의 정확성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는 제도가 잘 기능하고 있고,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징세와 납세비용이 낮아서 조세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경제가 세원을 잠식하고, 조세행정의 정보화·전산화가 아직 초보단계여서 기록 유지나 장부 정리 등의 단순 업무에 소요되는 자원이 지나치게 많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신고를 위해서 24가지의 각종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위해서는 75종의 정보

를 매달 신고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에는 납세순응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점이 있다.

III. 1999년 이후의 조세개혁과 평가

1989년의 자유 총선거로 집권한 자유노조(Solidarity) 주축의 정치 세력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제반 사회·경제제도를 개혁해 나갔다. 조세제도 또한 전반적인 변화의 조류에 맞추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운영에 적합한 구조로 바뀌면서 동구의 다른 체제 전환국에 비추어 그 기능을 잘 수행해왔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돈되어 있지 못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입된 제도들은 효율성, 형평성, 간편성이라는 조세체계의 대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에 1999년부터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이 추진되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경우 복잡한 각종 공제를 대폭 축소·정리하여 세원을 확대하는 반면 세율은 인하하여 세수에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성장기반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에 요구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면세와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부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 개인소득세의 개혁: 좌절된 시도

1999년 의회를 통과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대

6) 기존의 부동산에는 거래가격의 5%, 신규 부동산이나 조합주택에는 2%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농업 용도의 건물 거래에 대한 인지세는 면제된다.

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시행이 좌절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원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라는 대원칙하에, 현재의 세 단계 세율 구조에서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궁극적으로는 18%와 28%의 두 단계 세율을 가진 구조로 이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부유층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던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과 임대에도 소요되는 투자비용의 공제, 자영업자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비용공제를 철폐하여 세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각종 자본소득에 대한 종래의 차별적 과세를 시정하여 조세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줄이려는 노력이 행해졌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15%로 인하되고, 정기예금, 국공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를 철폐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현된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의 일부로 간주하여 누진 과세하는 것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다. 비록 정치적 압력을 이기지 못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좌절되었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재개정안이 발의되어 정치적 타협과정을 거치고 있다.

2. 법인소득세의 개혁: 세율의 인하와 세원의 확대

법인소득세 또한 개인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율은 내리고 세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어 1999년 의회를 통과하였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이 1999년 34%에서 2004년에는 22%로 낮아지며, 이로 인한 세수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축소 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세원을 확대하는 반면 세율은 인하하여 세수에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 기반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에 요구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지는 폐지하였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세무담의 경감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폴란드 내의 지사에 집중시키는 다국적 기업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3. 부가가치세의 개혁: 유럽 연합의 기준을 향해

부가가치세의 개혁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 요구되는 기준들을 충족시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2%의 일반세율과 7%의 특별세율은 유럽연합의 최소 기준⁷⁾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로 공급되는 대중교통, 수도공급 등의 공공 서비스와 에너지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의 권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문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면세조치를 철폐하여 유럽 연합의 요구 사항을 만족

7) 유럽연합의 최저 부가가치세율은 15%이며, 다만 사회적으로 문화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의 최저세율이 인정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폴란드의 조세개혁은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 분야의 개혁이 좌절되었고, 농업 부문을 부가가치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켜야 한다는 점이지만, 농민과 관련 단체의 정치적 위상이 높을 뿐 아니라 농업 부문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⁸⁾이 커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IV. 앞으로의 과제

폴란드의 조세개혁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소득 분배의 형평성 증진, 단순하고도 합리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이라는 대원칙하에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인소득세 분야의 개혁이 좌절되었고, 농업 부문을 부가가치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의 조세체계

가 당면하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체계 특히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구조가 고용 창출과 노동 공급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99년에 좌절된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이 시급히 재추진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세율을 내리고 연금 수혜율과 대상을 축소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조세쇄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경제를 공식 부문으로 끌어내어 세원을 확대하고, 공식 부문으로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2000년의 개혁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법에 산재하는 각종 자본소득에 대한 차별적 조세를 철폐해야 한다. 법인소득의 경우 투자재원의 종류, 투자자의 법적 지위, 투자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실효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차별적 조세가 투자 결정을 왜곡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유럽 연합의 정회원국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는 부가가치세제의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면세되고 있는 농업관련 물품과 신규 주택의 구입 등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영역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면세와 장부 기재 의무의 면제를 위한 기준을 유럽 연합의 권고에 맞추어 확정해야 한다.

넷째,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 외부불경제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환경세의 도입은 이론적·실증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세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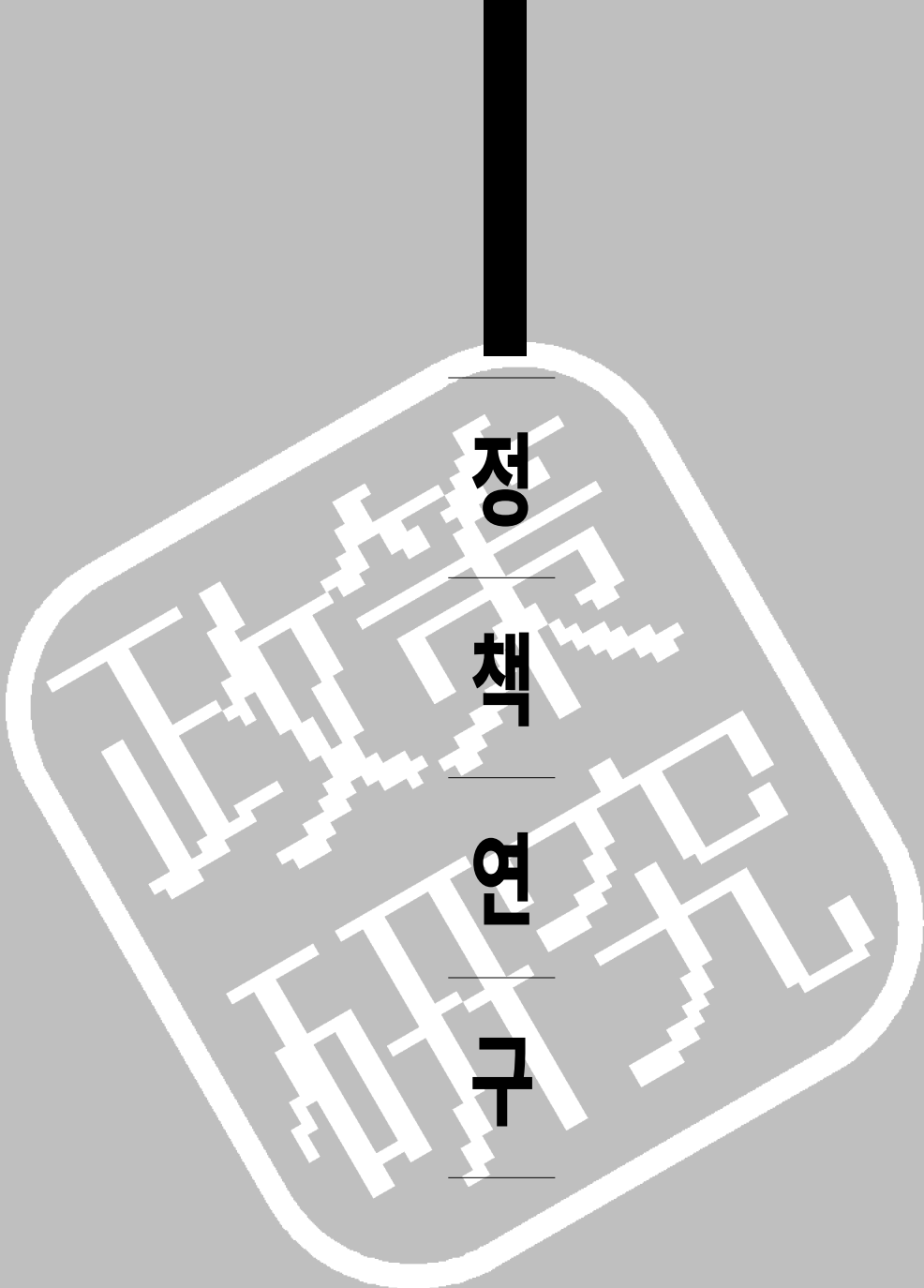
8) 예를 들어, 1999년의 경우 농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정도이므로 상당수의 잠재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

재 7%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석탄, 석유, 전력 등 난방관련 에너지 자원의 거래에 대해 22%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효과 보정과 소비 억제에 위한 특수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조세행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납세 순응도를 제고하고 납세순응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개인소득세의 신고 서식을 간단 명료하게 바꾸고, 조세 행정의 전산화를 촉진하며, 불명확하고 남용의 소지가 있는 세법 조항들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Lenain, Parick. and Leszek Bartoszuik., *The Polish Tax Reform*,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34. March 2000.



정책 연구

-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
을 위한 모형개발 / 李明憲 · 鄭在皓
-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 孫元翼
-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 金正勳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李 明 憲 전문연구위원(moseslee@kipf.re.kr)

鄭 在 皓 초청연구위원(jcheung@kipf.re.kr)

- 요 약 -

- 차기 라운드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관세율 정책의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GATT/WTO체제에서의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동학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하여관세율 인하의효과를예측함.
- 차기 라운드의 관세인하협상방식과 관련하여 국별·품목별 협상방식, 각종공식에입각한 인하방식(일괄선형 관세인하공식, 스위스 공식, 미국 공식, 일본 공식 등), 부문별 평균기준 삭감방식들과, EU의 관세조화방식안 등이고려대상이 되고 있음.
 - 관세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고 비교적 고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관심품목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본공식이나 EU의 관세조화방식이 관세인하의 주된 방식이되도록하는것이유리할것으로 보임.
-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을 통해 단순화된 관세율인하시나리오의 경제적효과들을비교하였음.
- 관세율 인하의 폭이 클수록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될것으로 전망됨.
 - 농림광산물 및 음식료품의 관세율 25%, 기타 공산품33% 인하의 시나리오하에서실질 GDP가인하가 없었을 기준상태(기준선)에 비해, 10년째에는 약 0.8% 높은 수준이 되며 새로운 균제상태에 달할 때에는1% 정도 높게됨.
 - 기타 공산품 인하율을 25%로 낮출 경우 균제상태에서기준상태를0.8% 초과함에그침.
- 단, 농림광업과 경공업과 같이 초기에 생산수준이 감소하고생산수준의회복도 더딘‘ 취약산업 이 있음.
 - 이 산업들은 관세율 인하 폭이 클수록 초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필요함.
-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을 통해 단순화된 관세율

I.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차기 라운드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관세율 정책의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GATT/WTO체제에서의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동학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하여 관세율 인하의 효과를 예측하였다.

8차에 걸친 GATT의 관세인하협상에서는 국별·품목별 협상방식, 여러 가지 공식에 입각한 인하방식(일괄선형 관세인하공식, 스위스 공식, 미국 공식, 일본 공식), 부문별 평균기준 삭감방식 등이 사용되었다. 차기 라운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방식들과, EU의 관세 조화방식안 등이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을 통해 단순화된 관세율 인하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들을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16개 부문 모형으로 경제주체의 동학적 최적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국산재와 수입재간의 대체탄력성이 소비, 중간재, 투자 등 그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모형의 계산을 위해서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관세율 인하의 기준은 1995년의 실적세율로 하였다. 비교대상이 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서, 시나리오 1은 농림광업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25% 인하하고, 그 밖의 공산품은 33% 인하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2는 서비스를 제외한 전(全)품목의 관세율을 25% 인하하는 것이며, 시나리오 3은 역시 농림광업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25%하고, 시나리오 1과 동등한 인하 후 평균세율을 목표로 하되, 음식료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관세율을 50% 인하한 후 0.75%P를 가산함으로

써 관세율의 편차를 시나리오 1보다 줄이는 방식이다. 관세율 인하 목표의 이행은 세 시나리오 모두 5년에 걸쳐균등한 %P를인하하는것으로하였다.

모형을 이용한 계산결과, 시나리오 1에 따른 인하의 경우 실질 GDP가 인하가 없었을 기준상태(기준선)에 비해, 10년째에는 약 0.8% 높은 수준이 되며 새로운 균제상태에 달할 때에는 1% 정도 높게 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시나리오 1의 경우보다 낮아서 새로운 균제상태에 들어갈 때 기준선을 넘는 정도가 0.8% 정도이다. 시나리오 3의 효과는 1과 거의 같다. 관세율 인하로 산업이 영향을 받는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생산수준이 감소하고 생산수준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산업들이다. 농림광업과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이 이에 속한다. 둘째 유형은 생산수준이 감소하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의 회복을 보이는 산업들로 섬유 및 가죽제품과 화학제품이 이에 속한다. 셋째 유형은 초기에 생산수준이 기준선 위로 높아져서 꾸준하게 이 경향이 유지되는 산업이다.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장비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유형은 초기에 생산수준이 상승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들이다. 전기전자기기 산업이 이에 속한다. 관세율 인하에 있어 첫째와 둘째 유형과 같은 산업에서의 구조조정 압력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정책시사점

먼저, 차기 라운드의 관세인하방식과 관련해서는, 관세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고 비교적 고른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관

심품목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식에 입각한 접근, 특히 일본공식이나 EU의 관세조화방식이 관세인하의 주된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분석은 네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관세율 인하의 폭이 클수록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 둘째, 관세율 인하에 따라 농림광업과 경공업과 같이 초기에 생산수준이 감소하고 생산수준의 회복도 더딘 ‘취약산업’이 존재한다. 셋째, 관세율 인하의 폭이 클수록 이 취약산업이 초기에 받는 충격은 더 크다. 넷째, 평균적 관세율 인하의 폭이 같은 경우, 관세율을 보다 균등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장기적 성장에 더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 차이는 생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 사이에서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위의 고려사항 중에서 앞의 세 가지 점은 정책당국이 직면한 일종의 제약선(constraint line)을 보여준다. 즉,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보다 과감한 관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취약산업이 받는 충격을 더 크게 한다. 이 제약선상에서 어떤 점을 택할 것인가는 물론, 정책당국이 어떤 정책목표에 어느 만큼 비중을 두는가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당국의 선택문제와 무관하게 제약선 자체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째는 위에 든 네번째 점을 고려하여 취약정도가 심한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인하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차기 라운드에서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세정책 이외의 정책 수단을 통해 취약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될 것이다.



B5변형/109면/2000. 12/값 5,000원

III. 앞으로의 연구개선방향

이 연구에 사용된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은 여러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조세측면의 자세한 고려, 정부지출의 독립적 반영을 통해 정부부문을 보다 사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조정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본은 그 양의 조정에 있어서 노동과는 비대칭적으로 경직성이 존재하는 생산요소이다. 따라서 이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 현실에 더 가까운 모형이 될 것이다. 셋째,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함수들의 형태를 우리나라의 현실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0-10 『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의 요약본으로 필자들 개인의 의견입니다.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孫 元 翼 연구위원(wson@kipf.re.kr)

- 요약 -

-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난 연구(손원익, 1995) 이후의 환경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의 과세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영리·비영리를 합한 전체 법인 수가 20만 6,354개이고 이 중 1만 3,295개인 6.4%가 비영리법인임.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모두 비과세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일본은 일반영리법인세율인 30%보다 낮은 22%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비영리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결정과정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비합리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I. 주요내용

1. 서론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에서 비영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비영리법인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관련 현황 및 세제

1999년말 기준 법인 수 총계는 20만 6,354개이며 이중 영리법인이 19만 3,059개로 93.6%를, 비영리법인이 1만 3,295개로 6.4%를 구성하고 있다. 법인세수 총액에서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1.7%에서 1998년 25.8%로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19%로 감소하였다.

1999년말 기준으로 각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수는 5,585개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부처는 교육부로 30.03%에 해당하는 1,677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22.17%, 11.32%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44.0%가 사단법인, 39.5%가 재단법인 형태이며 재단·사단법인이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 공익법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법



B5변형/155면/2000. 12/
값 6,000원

인세법 제24조에 의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결손금 차감한 금액까지 손금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한다. 또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3. 외국의 비영리법인 현황 및 세제

가. 미국

1991년 이래 면세단체의 수는 해마다 늘어 1997년 도 현재 면세단체의 수는 123만 2,214개로 1991년 대비 16.8% 증가하였다.

미국 경제에서 비영리부문은 국내 총생산의 약 5.5%(1997년), 민간부문 순부의 약 5%(1994년),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고용인구의 약 9.3%(1997년)를 차지하고 있다.

첫째,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와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범위가 상이하여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세법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가 부과된다. 여기서 고유목적무관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규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을 말하며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소득이 1천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민간재단의 경우 민간재단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산세(Excise Tax)라고 불리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가산세는 공익활동에 대한 면허세적 성격과 민간재단에 대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재단이나 매니저에 대한 벌칙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 당해연도의 배당금공제액, 결손금의 소급이월분, 자본손실의 소급이월분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IRS에서 면세자격을 얻으려면 ① 종교, ② 자선, ③ 과학, ④ 문학, ⑤ 교육, ⑥ 공공안전 시험의 목적, ⑦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장려(경기장 시설이나 장비의 제공은 제외), 또는 ⑧ 아동 및 동물 학대 방지의 8가지를 목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는 법인, 금고, 기금, 재단으로서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를 통해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나. 일본

공익법인은 1998년(평성 10년) 10월 1일 현재 전국에 2만 6,380개가 있으며, 그 중 사단법인은 1만 2,827개이고, 재단법인은 1만 3,553개이다. 일본의 모든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의 내용이나 활동범위에 따라 각기 소관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의 계산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각종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적용하는 세율은 일반영리법인(30%)보다 낮은 22%가 적용된다. 일반의료법인의 경우 세제상 영리법인과 똑같이 취급되지만 공립병원이나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공헌하여 재무성이 특별 의료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공익법인과 같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자본금의 0.25%와 소득의 2.5%의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일반기부금은 자본금의 0.125%와 소득의 1.25%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4.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첫째,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상이하여 기증자 및 수

증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세법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중 전액손금 인정되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이 기부금의 일정부분만 손금인정되는 사회복지, 자선, 교육, 종교, 문화등민법 32조의 비영리단체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비영리법인 인·허가를 위한 규칙이 있으나 그내용이 불충분하고, 실질적인운영이 적절히 되지 않으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지정할때에도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성의 시비가 자주 일고 있다. 이에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결정되도록 공익성 테스트의 도입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세법상 자동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는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이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며, 동시에 무상진료 등 자선사업을 제외한 일반의료행위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또는 의료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현행 세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이자소득 전액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 배당소득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동적 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재산출연의 형태 중 주식출연이 가장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당소득도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익법인에 대한 5% 주식보유한도 규정 때문에 신규 공익법인의 설립이 저해되고 기존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의결권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면서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언론매체 또는 공익사업 수행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 또는 홍보를 금지하는 규정이 1999년 세법 개정시 신설되어 공익법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이 다른 그룹기업의 광고를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고, 외국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광고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1999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2년에 한번의 부전문가의 확인·검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범위가 자산 5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를 매년 시행하거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은 비영리단체의 재무보고 작성기준을 제정한 후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0-01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의 요약분으로 필자들 개인의 의견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金正勳 연구위원(junkim@kipf.re.kr)

국고보조금의 대상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보조금의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외부효과와 내재화뿐만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의 재원조달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612개에 달하는 2001년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무의 법적 성격(기관위임사무인, 단체위임사무, 고유사무)과 보조 성격(누출효과 사업, 개인 대상 사업, 지역 사업)을 구분하였는데, 현행 법



B5변형/109면/2000. 12/값 5,000원

자체가 국가사무,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개편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향후 국고보조금의 단계적 정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있을 것이다.

국고보조금 대상 사무의 구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러한 사무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가장 명백한 방법은 지역적이고 고유사무적 성격이 강한 사무들은 순수 지방사무로 전환시키는 것이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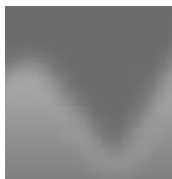
국고보조금의 축소 노력을 단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

체의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국고보조금의 장점을 감안할때, 오직 축소 지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개편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으로 지적되는 재원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는 통합보조금이나, 또는 좀더 큰 폭의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은 보조 대상 사업의 사후 관리이다. 사후 관리를 위한 성과 감사는 이상

적인 방안으로 많이 거론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현재의 행정 인프라를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평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강화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로부터 선진 감사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0-02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의 요약분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책흐름

1.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2. 중국의 외국인투자 동향
3. 소득세 무기장신고자 관리강화
4.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5.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현황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고국회계제도과에서 2001년 5월 29일에발표한
「2000회계연도정부결산」의전문입니다.

I. 요약

□정부는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2001년 5월 29일(화) 국무회의에상정하여의결하였음.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에 관한 정부결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6.10 8.20)를 거쳐 9월 2일까지국회에제출하게됨.

□ 2000회계연도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4조555억원(특별회계는2조 226억원)의순잉여금이발생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도 6조 5,266억원(GDP 대비1.3%)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재정운영이비교건전하게이루어진것으로 **평가됨**.

○조세수입(총92조 9,347억원)이예산보다13조 2,318억원(일반회계13조 1,845억원, 특별회계473억원) 증가함에따라
- 일반회계의재정수요충당을위한 국채발행규모를당초계획(10조 9,500억원)보다7조 3,780억원축소하였으며
-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도 13조 651억원의적자(GDP 대비△2.7%)에서6조 5,266억원(GDP 대비1.3%)의흑자로전환되었음.

○일반회계의 순잉여금 4조 555억원의 내역은 조세수입 증가에따른세입증가액(2조 4,476억원)과 국채발행축소와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예산 절약 등에 의한 세출불용액(1조 6,079억원)임.

□ 2000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4대부문 구조개혁과 건전 재정기조의 조기정착 및 뉴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도약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추진함과아울러중산층육성및서민생활안정, 지방경제활성화등을중점적으로지원하였음.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8.8%, 경상수지 110억달러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2.3%에서 안정되었고, 특히 실업률은 1999년 6.3%에서 2000년 4.1%로하락된편 외환보유고는 962억달러로대폭확충되었음.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은 161조 6,929억원으로 예산대비103.3%, 세출은 152조 2,520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 94.9%로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각각 7.8%, 7.1% 증가한수준임.

○일반회계의경우

- 세입은 조세수입이 전년보다 26.0%(16조 9,175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의 축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4.7% 감소한 10조 6,176억원이 징수되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전년보다 9.9%(8조 3,216억원) 증가한 92조 6,022억원임.
- 세출은이자율하락에따른국채및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 등의 지급이자비용 감소등으로예산현액보다3.0% 적은 87조 4,645억원이집행되었으며, 기능별집행내용을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지방 및 교육재정지원,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이자지급 규모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에비해사회개발비(15.2%)와 채무상환 및 기타(38.1%), 지방재정교부금(23.2%), 교육비(11.3%) 등이증가하였음.

- 2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각각 69조 907억원 및 64조 7,875억원으로 예산액(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고, 전년대비로는 각각 5.2%, 5.1% 증가하였으며,

-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2조 6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 226억원이발생하였음.

- 국민연금기금 등 2000년도 결산대상 44개 공공기금은 3조 7,371억원의당기순이익을실현하였으며,

-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에서 보험료수입 및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등10개 기금은연금급여 증가, 이자지출의 증가 등으로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음.

- 국가채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 등에서의 융자금채권의 증가로 전년보다 15조 9,163억원 증가한 142조 6,535억원임.

- 2000년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분)는 1999년보다 11조 2,270억원이 증가한 100조 9,416억원(GDP 대비 19.5%) 수준이며,

- 채무의 증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채권잔액의 증가(8조 3,223억원증) 등에기인함.

II.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가. 개요

- 2000회계연도 중 세입세출은 각각 161조 6,929억원 및 152조 2,520억원으로세입은 조세수입증가등에따라예산보다3.3% 초과징수되었고, 세출은이자율하락에의한 국채등의 지급이자비용 감소등에 따라 예산 현액(당해연도예산액+전년도이월액) 대비94.9% 집행되었음.

- 세입세출은전년대비각각7.8%, 7.1% 증가한수준이며

- 2000년중조세수입이예산보다 16.6%(13조 2,318억원)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당초계획보다7조 3,780억원축소(10조 9,500억원→3조 5,720억원)하였음.

□세입·세출의차액인세계잉여금은9조 4,409억원이며, 이 중 차기이월금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6조 781억원으로 1999년4조 4,332억원에비해1조 6,449억원증가하였음.

나. 일반회계

□세입 92조 6,022억원, 세출 87조 4,64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조 1,377억원이며,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4조 555억원으로전년(2조 3,724억원)에비하여큰 폭으로증가되었음.

○순잉여금의 발생은 주로 조세수입의 증가와 이자율 하락 등에따라국채및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의이자지급비용이감소(△8,291억원)한데기인한것이며

○일반회계순잉여금은향후세수상황을고려하여국가채무 상황이나 2001년도세입에이입하여사용하게됨.

□세입 92조 6,022억원은 전년보다 9.9%(8조 3,216억원), 예산보다 4.4%(3조 8,659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조세수입이 81조 9,846억원(세입의 88.5%), 세외수입이 10조 6,176억원(세입의 11.5%)임.

○조세수입은 예산보다 19.2%(13조 1,845억원) 초과징수 되었으며전년도에비해26.0% 증가하였음.

-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 정보통신 산업의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호전, 수입규모 및 증권거래 대금의증가등에기인함.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를 축소(△7조 3,780억원)하는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44.7%(△9조 3,186억원) 감소한 10조 6,176억원이징수되었음.

□세출은 국채발행규모축소에 따른 이자 미지급과 국채 및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등의지급이자비용감소등으로예산 현액보다 3.0%(2조 6,901억원) 축소된 수준인 87조 4,645억원이 집행되었으며<전년보다는 8.6%(6조 9,546 억원) 증가한수준>, 집행내역을기능별로살펴보면, 채무 증가, 지방교부세율인상, 사회안전망확충등으로전년에 비하여채무상환및 기타, 지방재정교부금, 사회개발비등 이각각38.1%, 23.2%, 15.2% 증가하였음.

다. 특별회계

□ 23개특별회계의세입·세출은각각 69조 907억원및 64 조 7,875억원으로 예산액(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각각 5.2%, 5.1% 증가하였음.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2조 6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2조 226억원이발생하였으며

○통신사업특별회계등 18개특별회계에서예금증가에따 른금융영업수입증가등으로순잉여금이발생하였고, 철 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는 세입 감소로 결손이 발생하였음(1개회계는수지균형).

○특별회계의 순잉여금은 각 특별회계법령에 따라 다음 연 도세입에이입하거나관련기금에적립하게됨.

2. 기금

□ 2000회계연도 결산대상인 공공기금은 44개로서당기순이익이 3조 7,371억원발생하였음.

○국민연금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 34개 기금에서 자산운용수익 및 보험료수입·환율 상승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등 10개 기금에서 연금급여 및 이자지출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음.

3. 채권

□ 2000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전년말 126조 7,372억원보다 15조 9,163억원증가한 142조 6,535억원임.

○내역별로는 융자회수금 120조 9,371억원(84.8%), 예금 및 예탁금 11조 5,259(8.1%), 조세채권 7조 179억원(4.9%) 등이며

○채권의 증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 7조 6,969억원,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3조 7,776억원 등에 기인함.

4. 채무

□ 2000년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분)는 전년말보다 11조 2,270억원 증가한 100조 9,416억원으로 GDP 대비 19.5% 수준임.

○이는 1997년말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이 금융기관 구조조정·경기진작·실업대책 등에 있어서 적극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조달한데따른것임.

○내역별로는 국채가 76조 3,252억원(75.6%), 차입금 21조 9,066억원(21.7%), 국고채무부담행위 2조 7,098억원(2.7%)이며,

○그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채가 10조 5,192억원,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각각 5,204억원, 1,874억원 증가하였음.

- 국채의 증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채권(8조 3,223억원 증),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주택채권(1조 9,245억원 증) 및 환율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2조 6,617억원증) 등의증가에기인함.

5.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공공기금(금융부문인외국환평형기금제외) 등의 2000년결산상통합재정수지는수입이 135조 8,107억원, 지출이 129조 2,841억원으로 6조 5,266억원(GDP 대비 1.3%)의흑자를나타내었음.

□ 2000년의 흑자규모는 전년도의적자 13조 651억원(GDP 대비 △2.7%)과 예산상의 적자 18조 8,523억원(GDP 대비 △3.6%)에비하여큰폭으로개선된것이며, IMF 이후 증가하던 적자규모가 1999년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00년에흑자를시현함.

<연도별통합재정수지>

(단위: 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0,990 (0.3)	△69,593 (△1.5)	△187,573 (△4.2)	△130,651 (△2.7)	65,266 (1.3)

- 부문별재정수지는일반회계에서 24조 2,991억원의흑자, 공공기금에서 3조 811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 등의 적자(△20조 8,536억원)를 충당하고 도재정전체로는6조 5,266억원의흑자를나타내었음.
- 일반회계의흑자는조세수입의증가에기인하며, 공공기금의 흑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함.

중국의 외국인투자 동향

※이자료는 재정경제부경제협력국경제총괄과에서 2001년 5월 24일에 발표한
「중국의외국인투자동향」의전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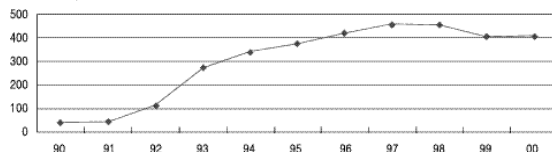
◇중국은막대한시장잠재력을바탕으로최근5년간매년4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개도국 중1위, 세계2위의외자유치국으로서의지위를고수하고있음.

◇우리나라도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사관계의 안정 등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할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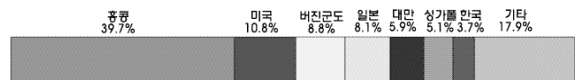
1. 현 황

□본격적인외자유치정책이시작된 1993년부터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0년에는 408억달러를 기록 (FDI/GDP 비율: 30.9%(1999))

(실행기준, 억달러)



《국가별》75%가 아시아계 자본이며, 홍콩·대만으로부터의 투자가전체투자의 46%에달함.



《지역별》동부 해안지역이 88%, 중·서부 내륙지방은 9%, 3%에불과하여지역간불균형이극심.

《업종별》노동집약적 가공무역 제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부동산업을 제외한 3차산업 및 1차 산업은매우부진



2. 중국 정부의 정책 및 투자환경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 등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외자유치 창구의역할을하도록하고, 각종우대조치를제공

○SOC 정비, 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토지사용·인프라 이용에대해특혜부여, 영업규제완화

□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WTO 가입을 목전에 두고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적우대조치를 축소해나갈 방침

※투자환경

《긍정적요인》

① 막대한 내수 잠재력

- 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 개방, 서부대개발 계획 등 내륙 지방으로의 개발 확산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기대됨.

② 수출기지로서의 적합성

- 풍부한 부존자원, 낮은 인건비·자가,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 등

《부정적요인》

① 행정의 투명성 부재 및 부패

- 투자허가, 영업제한 등 각종 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에 구조적 부패 만연

② 숙련된 노동자 부족 · 인프라 미비 등

○ 중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 환경을 보완하고 첨단 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임.

3. 평가와 전망

□ 막대한 시장 잠재력 및 향후 투자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중국으로의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A.T.Kearney, FDI 선호도 2위, 중국 정부, 향후 5년간 평균 500억 달러 유치 목표

□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시장 잠재력은 뒤지나 투자 여건에 서 우월

소득세 무기장신고자 관리강화

※ 이 자료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2001년 5월 15일에 발표한
「소득세 무기장신고자 관리강화」의 전문입니다.

1. 사업자의 소득세 기장신고 현황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기장신고 추이

(단위: 천명,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1,247	100.0	1,299	100.0	1,226	100.0	1,342	100.0
기장신고자	391	31.4	406	31.3	386	31.5	573	42.7
무기장신고자	856	68.6	893	68.7	840	68.5	769	57.3

* 소득세 신고자 중 추계 신고한 과세 미달자(과세표준이 없는 자) 제외

○ 1999년 이전에는 기장 사업자가 약 40만명 정도로 변화가 없었으나

- 지난해 신고(1999년 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장 신고자가 57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증가비율 48.4%).

⇒ 처음으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 17만명

□ 사업자의 기장 의무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소득세법 §60).

2.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신고에 대한 관리 강화

□ 복식부기의무란?

○ 이종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완비하고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복식부기의무라 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신고 유형

(단위: 천명, %)

	1998년		1999년		200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307	100.0	269	100.0	292	100.0
기장 신고자	297	96.7	26	97.0	282	96.6
무기장 신고자	10	3.3	8	3.0	10	3.4

○ 사회 전반의 장부 기장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1만명

내외) 복식부기의무자들이 장부기장을 회피하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있음.

□복식부기의무자가무기장신고시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장부를기장하지않고소득세를추계신고하면표준소득률에 10%를가산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고
-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므로단순계산하여도 기장신고자보다 30% 이상 세부담이 많아짐.

* 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하면무기장가산세(1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가부과됨.

-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신고를 회피하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탈루 사실의적발을피하기위한수단일수있음.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부담 비교 ⇒ [참고자료 1]

□복식부기의무자의무기장신고중점관리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고도 고의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소득세를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수입금액또는소득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관리를대폭강화할것임.

- 그동안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실태를 분석하고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추계신고의사유를검토하여
-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바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입금액과 실제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할것임.

- 특히지금까지기장에의해소득세를신고해온복식부기의무자가이번소득세를추계신고한 경우에는반드시세무조사를실시하여

- 장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하여신고하는잘못된관행을근절시킬것임.

3. 간편장부제도

□간편장부대상자

- 사업자는복식부기에의해장부를기장하는것이원칙이지만 기장능력이부족한소규모사업자를위해 1999년(2000년5월신고분)부터간편장부제도시행

- 간편장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되므로 회계학이나 부기 상식이 없어도 기장할 수있으며

-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지않아도되고신고방법도간편함.

※간편장부대상자와복식부기의무자기준⇒[참고자료2]

□간편장부기장에대한혜택

- 산출세액의 10%를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원한도)

- 처음으로기장을시작하면2년간세무조사면제

◇무기장시불이익

-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등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추계신고하면 10%의무기장가산세부과

○금년에는간편장부에의한신고가더욱늘어나기장신고자가 65만명이상이될것으로전망

[참고자료 1]

□복식부기의무자의기장신고와추계신고의세부담비교

◇사례

○업종: 의료업, 산부인과

○ 2000년도에수입금액: 3억원(복식부기의무자, 4인가족)

※표준소득률: 35.5%(병원건물이자기소유인경우)

◇세부담비교

(단위: 천원)

	기장신고의경우	무기장신고의경우	차액
수입금액	300,000	300,000	
필요경비 ①	211,791	-	
표준소득률 ②	-	$36.5 \times 110\% = 40.15$	
소득금액 ③	88,209	120,450	32,241
소득공제액 ④	4,600	4,600	0
과세표준	83,609	115,850	32,241
세율	40%	40%	0
산출세액	20,443	33,340	12,897
신고불성실가산세 ⑤	-	6,668	6,668
소득세부담액	20,443	40,008	19,565

- 주: ①산부인과로서기장신고자의평균경비비율로필요경비계산
 ②복식부기의무자는표준소득률에10%를가산하여적용
 ④4인가족기본공제 4,000천원및표준공제 600천원
 ⑤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하면20%의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참고자료 2]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구분기준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0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2. 직전 연도(1999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금액이 다음 각
목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

	업종	표준소득률코드번호	수입금액기준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및다목에해당되지않는업	01, 02, 05, 10 14, 50(5013 및502 제외), 51, 52(526제외), 703, 98	3억원
나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및통신업, 금융및보험업	16 38, 40 41, 45, 526, 55, 60 64, 65 67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5013, 701, 702, 71 74, 80, 85, 90 94, 95, 502	7천5백만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재산세제과에서 2001년5월9일에발표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대한세제지원」의전문입니다.

□지원배경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되어 금
년7월1일부터부동산투자회사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
자회사의설립이가능해짐에따라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에 준
하는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
원하고부동산수요기반을확충함.

□세제지원내용

○특별부가세감면

-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보유한
부동산을매각하는경우양도차익에대하여특별부가세(현
행세율: 15%) 50% 감면

○취득세·등록세감면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
등록세(3%) 50% 감면.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대

하여는취득세·등록세전액면제

○투자손실준비금손금산입등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
자손실준비금으로손금산입할수있도록하고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전액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제외

* 일반법인이 대도시에 설립되는 경우 등록세에 중과세율
(일반세율 0.4%의 3배인 1.2%)이 적용되나, 부동산투
자회사 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기 개정(2001년 4월 임시국회)

□추진계획

-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현황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기획국산업재정과에서 2001년5월2일에 발표한
「주요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운영현황」전문입니다.

◆지역별 세원차이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국은 이전재원(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의지방 이양을골자로하는지방재정조정제도를운영하고있음.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작업에 참고하고자 주요 선진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검토

【주요 선진국의 운영현황】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주요선진국도국가형태(연방, 단일), 조세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지방재정조정제도를운영중

○각국은지역간세원이불균형하고, 국방·복지등중앙재정에대한수요가큰점을감안하여국세위주의세제를운영

* 국세비중: 미국 59%(1998), 독일 51%(1998), 프랑스 82%(1997), 일본59%(1998)

○그러나, 중앙정부는지역간재정력격차완화, 국가위임사무의 처리, 지방사업의 촉진 등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

를통해지방정부에재원을이전

- 이전재원을 감안한 조세수입의 배분비율은 프랑스를 제외한대부분국가에서지방이높은실정

* 조세수입 중 지방배분 비율: 미국 68%(1998), 독일 71%(1998), 프랑스31%(1997), 일본63%(1998)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방정부에 사용용도의 결정을 위임하는 교부금과 중앙정부가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보조금으로구분가능

- 연방국가(미국, 독일)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활용할수 있는 지방세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교부금보다는보조금위주로지원하고,

- 단일국가(일본, 프랑스)는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교부금위주로지원

* 교부금 / 중앙이전재원: 미국 0%(1998), 독일 27.8%(1999), 프랑스 91.0%(1997), 일본 52.5%(1998)

□각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세부운영방식을살펴보면

○미국은보조금을주로활용

- 연방차원에서는교부금을지원하지않고있음.
- 다만, 최근보조금위주의운영을보완하기위해일부보조금을포괄보조금, 통합보조금으로전환하여지원
-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유사보조사업을 통합한 후 인구수, 세수입등으로구성된법정공식에따라재원배분
- 통합보조금(Performance Partnership Grants)은보조사업에 대해 실소요에 따라 재원을배분하되, 유사사업간전용허용

○독일은 공동세 제도(Tax Sharing)를 활용하여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간재원을배분한후,

- 주정부간재원을직접이전하는수평적재정조정방식인역교부금제도(Negative Grants)를시행하고있으며,
- 연방 · 주정부가지방정부에교부금및보조금을지원

○프랑스는중앙집권전통에따라중앙정부가통제하는보조금위주로지원하였으나,

- 1979년 경상비중합교부금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 신설이후교부금비중이점차확대
- 1982년 지방분권화 조치 이후 투자비중합교부금, 분권화 일반교부금등교부금추가(1997 교부금비중: 91%)
- 교부금과는 별도로 사업세형평기금을 조성하여 영세한 지자체지원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교부세, 양여세, 국고보조부담금을지원

- 다만, 국고보조부담금의 정비, 통 · 폐합 등을 통해 탄력적인운영을추진중

참고자료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1.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내용

(1) 미 국

조세제도에의한재원배분

- 연방, 주, 지방정부간 경합과세(Tax Overlapping)방식과 분할과세방식병용

-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는 연방, 주, 지방 모두 과세권 보유, 관세는 연방, 재산세는 주 · 지방만 과세권 보유 → 경합과세의결함을인식하고세원을분할하려는시도가여러차례있었으나실패

- 주요세목으로는연방정부는소득세(1998: 49.2%), 州정부는소비세(54.2%), 지방정부는재산세(72.9%)

- 국세와지방세의비율은59 대 41(1998년)로서국세의비중이약간높은수준이나,

- 사회보장기여금포함시국세비중은68% 수준으로증가

세입재원재배분에의한조정

- 연방정부보조금

○제도적으로연방정부차원의교부금은없음.

- 1972 1985년간州정부, 지방정부의재정을원조하기위해한시적으로시행한경험

○유럽국가들과는달리아직도보조금위주의운영

- 사업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s): 연방정부가지정한 용도에 따라 주·지방이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특정보조금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유사보조사업을통합한후인구수, 세수입등으로구성된법정공식에따라포괄지원
- 통합보조금(Performance Partnership Grants)은보조사업에 대해 실소요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되, 유사사업간전용허용

○포괄보조금과 통합보조금은 보조금 위주의 제도운영을 보완하기위한이전재원

- 1971년 이래 모든 대통령이 사업별 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를통한재원의 효율적활용제안→의회의반대로추진에어려움
- 1974년 70여 개 사업별보조금을교육, 노동, 도시개발등4개분야포괄보조금으로전환(1994년: 16개포괄보조금)
- 1996년환경국에서성격이유사한 17개사업별보조금을통합보조금으로전환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지방간의재정력격차를고려한재원배분기능은미약

□州정부이전재원

○주정부는지방정부에교부금과보조금을병행지원

- 교부금은 인구, 학생수, 소득, 포장도로 연장 등을 고려하여사전에결정된공식에따라지원

(2) 독 일

조세제도에의한재원배분

□연방세, 지방세외에공동세(Tax Sharing)제도운영

○세수의 75%를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연방, 주, 지방정부가함께징수한후일정비율로배분

- 소득세·법인세배분비율: 연방헌법에규정
- 부가세배분비율: 연방법에서1 3년기한으로규정

연방과주간 재원배분의신축적 조정역할

(단위: %)

	연방	주	시·군
소득세	42.5	42.5	15
법인세	50.0	50.0	-
부가세 ¹⁾	50.5	49.5	-

주: 1) 1997년배분비율

○기타 조세는 세원분할 방법에 의해 연방, 주, 지방이 각각과세

□공동세방식으로州정부에배분된재원중

○소득세·법인세는 해당 州의 세수실적에 근거하여 州정부간에배분하나,

○부가세는 州의 거주인구수, 1인당 세수액 등을 고려하여재정력이취약한州정부에집중배분

→상대적으로인구수가많거나1인당세수가낮은州정부
의배분액이늘어나재원이전효과발생

세입재원재배분에의한조정

□**逆교부금(Negative Grants)**제도에의한州정부간재원조정

○역교부금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州정부간에 시행되
는수평적재정조정방식

○각주의재정력과재정수요를산출한후
재정력초과(재정력>재정수요) 州에서기여한재원으로
재정력부족(재정력<재정수요) 州를지원

□연방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교부금과 보조금
지원

□州정부지원금을통한州와지방간재정조정

○州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
로교부금과보조금제공

- 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일정
공식에따라배분

- 보조금은 특정분야(학교,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에 용도
를지정하여지원

○지방정부에대한지원금중보조금비율은감소추세
1970년대75% → 1990년대40%

(3) 프랑스

조세제도에의한재원배분

□세원분리방식

○동일한 세원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 이용하지 않고, 중앙정
부와지방정부간에세원을분리

- 국 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관세등

- 지방세: 대지세, 사업세, 전기세, 자동차면허세등

□높은국세비중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에서는 국세비중이 매우
높은수준

○1982년미테랑정부의 지방분권화조치 이후 지방세 확충
노력이추진되고있으나, 국세비중이82% 수준(1997)

세입재원재배분에의한조정

□1980년이후교부금위주로제도개편

○당초보조금중심의 재원이전이 이루어졌으나, 1979년경
상비종합교부금신설이후교부금비중확대

- 경상비종합교부금(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

• 데빠르뜨망(Département), 코뮌(Commune)의 경상계
정에대해국세인부가세의일정비율을지원하는교부금

* 프랑스의지방행정구역

레지옹(R gion): 廣域道, 데빠르뜨망(Département): 道,

코뮌(Commune): 市·郡

- 기본교부금, 형평화교부금, 보상교부금등으로구분하여 인구, 세수입을기준으로지원

○ 1982년 지방분권화 조치 이후 투자비종합교부금, 분권화 일반교부금등일반재원을추가

- 투자비종합교부금(Dotation Globale d'Équipement)

- 자금배분 불확실성,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점을 내포한 특수보조금을 대체하여 코뮌과 데빠르뜨망의 투자계정 지원

- 분권화 일반교부금(Dotation Générale de Décentralisation)

- 지방분권화법 시행으로 중앙정부 기능이 추가로 이양됨에 따라재원보전수단으로도입
- 중앙정부는기능을이양하면서 50%는국세의지방세전환으로, 나머지 50%는분권화일반교부금으로재원을보전

□ 교부금과 별도로 사업세형평기금(Fonds de Péréquation de la Taxe Professionnelle)을설치하여 재정력 격차 완화기능강화

○ 주민 1인당 세수가 평균세수의 2배 이상인 코뮌에 기금납부의무를부과하여 1980년에사업세형평기금조성

○ 동기금으로재정력이취약한영세코뮌(Commune)을지원

□ 보조금비중은전체지원금중9% 수준(1997)에불과

○ 지방산업육성, 지방교육지원 강화등을위해사업별보조금등을운용

(4) 일 본

조세제도에의한재원배분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세원을분리

○ 지방세는도부현세와시정촌세로구분

- 도부현세: 사업세, 도부현민세, 자동차세등

- 시정촌세: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등

* 일본의지방행정구역: 都道府縣(광역단체), 市町村(기초단체)

□ 1997년 지방소비양여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 확대를추진중이나, 국세비중이높은편(1998: 59%)

세입재원재배분에의한조정

□ 지역간재정력격차완화를위해 1954년지방교부세도입

○ 기존지방재정평형교부금제도를폐지하고, 지원규모를국세수입에연계하여안정적인재원확보도모

- 교부세 재원: 소득세·주세 32%, 법인세 35.8%, 소비세 29.5%, 담배세 25%

* 지방재정평형교부금: 교부금총액을지자체재원부족액함계로 결정→ 매년 총액결정시 중앙과 지방간 논란 발생 (1950 1953)

○ 지방의 재정력차¹⁾에 따라 배분하는 보통교부세(94%)와 특정재정수요에따라배분하는특별교부세(6%)로구성

주: 1)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 사용용도를지자체에위임하는일반재원이나,
-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중앙정부 관심분야에 「가중치」를 적용, 차별화함으로써정책의지를반영한다는비난도제기

□세원의 지역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1955년부터 국세¹⁾의 일정비율을양여금으로지원

주: 1) 도로세, 자동차석유가스세, 항공기연료세, 자동차량세, 특별토세

- 양여금은교부금과는달리양여세원과밀접한관계에있는 특정분야사업에만활용
- 지방도로양여세, 자동차석유가스양여세는도로정비, 항공기연료양여세는공항지역정비등특정용도에사용

□특정목적사업을추진하기위해국고보조부담금지원

-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하나, 국고부담금·국고위탁금·국고보조금의3종으로분류
- 국고부담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사업추진비용지원
- 국고위탁금: 중앙정부가수행해야 할업무를지자체가 대신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지원
- 국고보조금: 원칙적으로는 지방비로 추진할 사업이나, 국가전체적으로필요한사업의비용지원

- 최근국고보조금의통합·정비를통해지방의자율성제고를추진중
- 1994년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100개 국고보조금 정비
- 2000년에는 농림성, 건설성의 국고보조금 중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만정되는7개보조금을3개보조금으로통합

2.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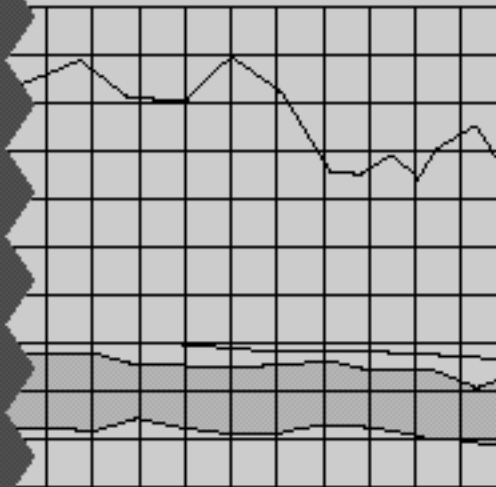
	미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한 국
• 정부간계층구조	연방-주-지방	연방-주-지방	중앙-레지옹-데парта망-교역	중앙-도도부현-시정촌	중앙-광역-기초
• 조세체계	연방세, 지방세	연방세, 지방세, 공동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 국세:지방세	59 : 41 (1998)	51 : 49 (1998)	82 : 18 (1997)	59 : 41 (1998)	80 : 20 (2001)
• 가용재원(중앙:지방)	32 : 68 (1998)	29 : 71 (1998)	69 : 31 (1997)	37 : 63 (1998)	45 : 55 (2001)
• 이전재원/ 지방세입	28.3%(1998)	25.4%(1998)	34.2%(1997)	39.2%(1998)	47.8%(2001)
• 교부금/중앙정부이전재원	0%(1998)	27.8%(1999)	91.0%(1997)	52.5%(1998)	64.7%(2001)
• 교부금	· 州교부금(주→지방)	· 역교부금(주→주) · 聯邦교부금(연방→주) · 州교부금(주→지방)	· 종합교부금 - 경상비종합 - 투자비종합 · 분권화일반교부금 · 사업세형평기금등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
• 보조금	· 聯邦보조금(연방→주,지방) - 사업별보조금 - 포괄보조금 - 통합보조금 · 州보조금(주→지방) - 사업별보조금	· 聯邦보조금(연방→주) · 州보조금(주→지방)	· 사업별보조금등	· 지방양여세 · 국고보조부담금 - 국고부담금 - 국고위탁금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주: 1) 조세수입및이전재원고려시 2) 지방채수입은제외



재정통계

1.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2.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징현황
5. 업태별 부가가치율



1.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77	218,224	247,238	241,573	642	5,023	113.3	110.7
1978	817,115	846,942	838,907	4,709	3,326	103.7	102.7
1979	1,006,946	1,103,417	1,088,675	4,963	9,779	109.6	108.1
1980	1,472,163	1,507,150	1,471,194	9,244	26,712	102.4	99.9
1981	1,890,413	1,899,076	1,804,760	16,106	78,210	100.5	95.5
1982	2,142,931	2,251,111	2,094,383	26,621	130,107	105.0	97.7
1983	2,513,658	2,759,183	2,559,277	37,997	161,909	109.8	101.8
1984	2,737,860	2,945,555	2,704,272	44,571	196,712	107.6	98.8
1985	3,031,074	3,154,923	2,901,197	50,691	203,035	104.1	95.7
1986	3,138,132	3,605,941	3,272,210	65,962	267,769	114.9	104.3
1987	3,579,790	3,949,942	3,650,479	76,742	222,721	110.3	102.0
1988	3,995,152	4,382,836	4,205,215	72,457	105,164	109.7	105.3
1989	4,686,836	5,463,006	5,260,229	71,990	130,787	116.6	112.2
1990	6,714,058	7,187,670	6,964,419	68,159	155,092	107.1	103.7
1991	8,752,203	8,588,360	8,252,627	62,689	273,044	98.1	94.3
1992	10,383,796	10,610,992	10,076,296	101,703	432,993	102.2	97.0
1993	12,003,846	12,287,114	11,687,506	152,562	447,046	102.4	97.4
1994	13,478,700	13,762,576	13,057,973	170,144	534,459	102.1	96.9
1995	14,522,400	15,754,211	14,636,893	365,278	752,040	108.5	100.8
1996	16,606,400	18,225,257	16,789,539	469,481	966,237	109.7	101.1
1997	18,619,200	21,473,127	19,487,991	572,279	1,412,857	115.3	104.7
1998	16,434,200	18,200,874	15,706,805	981,218	1,512,851	110.7	95.6
1999	18,807,706	22,900,346	20,369,037	930,947	1,600,362	121.8	108.3

주: 1. 징수 준이며 수납액은 수입분을 포함.

2. 납세자수는 각 연도 2월 확정 신고 인원이며 1989년 이후는 소액부징수자를 포함한 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단위: 명, 억원)

	신 고 인 원					과 세 표 준				
	계	법인	개인일반	간이	과세특례	계	법인	개인일반	간이	과세특례
1983	1,168,672	37,525	252,273	-	878,874	1,434,211	1,122,819	245,963	-	65,429
1984	1,221,161	40,645	281,786	-	898,730	1,548,835	1,193,717	286,950	-	68,168
1985	1,269,342	43,712	310,883	-	914,747	1,649,959	1,270,472	310,788	-	68,699
1986	1,341,398	47,523	345,143	-	948,732	1,896,456	1,462,464	365,506	-	68,486
1987	1,420,082	53,088	388,894	-	978,100	2,270,977	1,765,903	438,102	-	66,972
1988	1,472,424	59,934	410,269	-	1,002,221	2,654,569	2,065,858	518,390	-	70,321
1989	1,654,553	69,511	468,771	-	1,116,271	2,965,561	2,293,451	594,378	-	77,732
1990	1,834,240	81,402	550,780	-	1,202,058	3,632,349	2,806,283	738,178	-	87,888
1991	1,988,821	94,579	626,974	-	1,267,268	4,456,882	3,453,829	905,849	-	97,204
1992	2,102,203	107,073	672,723	-	1,322,407	5,048,362	3,952,451	988,039	-	107,872
1993	2,253,105	117,374	778,854	-	1,356,877	5,778,181	4,522,435	1,135,498	-	120,248
1994	2,388,044	133,911	933,335	-	1,320,798	6,903,037	5,402,193	1,373,072	-	127,772
1995	2,526,198	150,023	1,103,567	-	1,272,608	8,383,692	6,635,042	1,618,249	-	130,401
1996	2,580,113	169,512	926,841	273,197	1,210,563	9,606,041	7,671,075	1,732,211	53,382	149,373
1997	2,930,116	192,333	1,004,852	490,034	1,242,897	10,859,827	8,816,471	1,751,835	132,579	158,942
1998	2,855,369	197,185	979,285	546,161	1,132,738	10,569,437	8,769,673	1,538,111	125,864	135,789
1999	2,998,956	232,474	1,059,109	586,800	1,120,573	11,717,850	9,598,884	1,821,606	158,356	139,004

주: 연도별 인원은 소액부징수자를 포함한 각 연도 2회 확정 신고 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단위: 억원, %)

	유형	납부세액			환급세액					실세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가환급			세액	점유비
							소계	수출	시설투자		
1983	계	35,095	19,755	15,340	10,106	914	9,192	8,286	906	24,989	100.0
	법인	28,434	13,094	15,340	8,807	582	8,225	7,621	604	19,627	78.5
	개인일반	5,395	5,395	-	1,299	332	967	665	302	4,096	16.4
	특례	1,266	1,266	-	-	-	-	-	-	1,266	5.1
1984	계	40,668	22,277	18,391	13,287	983	12,304	11,094	1,210	27,381	100.0
	법인	32,945	14,554	18,391	11,623	620	11,003	10,245	758	21,322	77.9
	개인일반	6,401	6,401	-	1,664	363	1,301	849	452	4,737	17.3
	특례	1,322	1,322	-	-	-	-	-	-	1,322	4.8
1985	계	43,750	24,340	19,410	14,045	763	13,282	11,762	1,520	29,705	100.0
	법인	35,517	16,107	19,410	12,318	487	11,831	10,815	1,016	23,199	78.1
	개인일반	6,901	6,901	-	1,727	276	1,451	947	504	5,174	17.4
	특례	1,332	1,332	-	-	-	-	-	-	1,332	4.5
1986	계	50,565	29,339	21,226	18,132	708	17,424	15,528	1,896	32,433	100.0
	법인	41,013	19,787	21,226	15,922	444	15,478	14,140	1,338	25,091	77.4
	개인일반	8,222	8,222	-	2,210	264	1,946	1,388	558	6,012	18.5
	특례	1,330	1,330	-	-	-	-	-	-	1,330	4.1
1987	계	62,854	33,783	29,071	26,715	699	26,016	23,468	2,548	36,139	100.0
	법인	51,652	22,581	29,071	23,945	422	23,523	21,750	1,773	27,707	76.7
	개인일반	9,907	9,907	-	2,770	277	2,493	1,718	775	7,137	19.7
	특례	1,295	1,295	-	-	-	-	-	-	1,295	3.6
1988	계	74,002	40,696	33,306	29,422	918	28,504	24,805	3,699	44,580	100.0
	법인	60,516	27,210	33,306	26,250	589	25,661	23,092	2,569	34,266	76.9
	개인일반	12,121	12,121	-	3,172	329	2,843	1,713	1,130	8,949	20.1
	특례	1,365	1,365	-	-	-	-	-	-	1,365	3.1
1989	계	84,015	48,834	35,181	29,063	1,465	27,598	22,306	5,292	54,952	100.0
	법인	68,342	33,161	35,181	24,766	965	23,801	20,411	3,390	43,576	79.3
	개인일반	14,185	14,185	-	4,297	500	3,797	1,895	1,902	9,888	18.0
	특례	1,488	1,488	-	-	-	-	-	-	1,488	2.7
1990	계	105,009	61,827	43,182	35,370	1,901	33,469	23,111	10,358	69,639	100.0
	법인	85,429	42,247	43,182	28,770	1,173	27,597	20,935	6,662	56,659	81.4
	개인일반	18,022	18,022	-	6,600	728	5,872	2,176	3,696	11,422	16.4
	특례	1,558	1,558	-	-	-	-	-	-	1,558	2.2
1991	계	130,034	78,009	52,025	42,320	2,937	39,383	28,108	11,275	87,714	100.0
	법인	104,878	52,853	52,025	34,267	1,817	32,450	25,778	6,672	70,611	80.5
	개인일반	23,398	23,398	-	8,053	1,120	6,933	2,330	4,603	15,345	17.5
	특례	1,758	1,758	-	-	-	-	-	-	1,758	2.0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계속)

(단위: 억원, %)

	유형	납부세액			환급세액					실세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가환급			세액	점유비
							소계	수출	시설투자		
1992	계	144,496	90,650	53,846	41,285	3,214	38,071	28,446	9,625	103,211	100.0
	법인	115,995	62,149	53,846	34,085	2,052	32,033	26,001	6,032	81,910	79.4
	개인일반	26,505	26,505	-	7,200	1,162	6,038	2,445	3,593	19,305	18.7
	특례	1,996	1,996	-	-	-	-	-	-	1,996	1.9
1993	계	160,738	102,984	57,754	41,396	4,336	37,060	27,657	9,403	119,342	100.0
	법인	129,640	72,086	57,754	33,234	2,751	30,483	25,025	5,458	96,606	80.9
	개인일반	28,641	28,641	-	8,162	1,585	6,577	2,632	3,945	20,479	17.2
	특례	2,257	2,257	-	-	-	-	-	-	2,257	1.9
1994	계	187,923	117,816	70,107	50,879	4,555	46,324	33,453	12,871	137,044	100.0
	법인	151,650	81,543	70,107	40,695	2,408	38,287	30,528	7,759	110,955	80.9
	개인일반	34,130	34,130	-	10,184	2,147	8,037	2,925	5,112	23,946	17.5
	특례	2,143	2,143	-	-	-	-	-	-	2,143	1.6
1995	계	225,403	136,535	88,868	72,431	6,462	65,969	48,498	17,471	152,972	100.0
	법인	182,921	94,053	88,868	60,408	4,021	56,387	45,342	11,045	122,513	80.1
	개인일반	41,090	41,090	-	12,023	2,441	9,582	3,156	6,426	29,067	19.0
	특례	1,392	1,392	-	-	-	-	-	-	1,392	0.9
1996	계	259,402	158,360	101,042	83,579	7,601	75,978	54,644	91,664	175,823	100.0
	법인	211,579	110,537	101,042	70,074	4,828	65,246	50,956	14,290	141,505	80.5
	개인일반	46,152	46,012	-	13,478	2,746	10,732	3,688	7,044	23,674	13.5
	간이	969	969	-	27	27	-	-	-	942	0.5
1997	계	285,212	170,088	115,124	91,373	7,914	83,459	61,277	22,182	193,839	100.0
	법인	235,123	119,999	115,124	75,998	5,410	70,588	56,853	13,735	159,125	82.1
	개인일반	46,658	46,658	-	15,343	2,472	12,925	4,424	8,447	31,315	16.2
	간이	2,586	2,586	-	32	32	-	-	-	2,554	1.3
1998	계	273,421	164,078	109,343	99,793	6,091	93,702	80,970	12,732	173,628	100.0
	법인	227,908	118,565	109,343	88,616	4,148	84,468	75,626	8,842	139,292	80.2
	개인일반	42,012	42,012	-	11,166	1,932	9,234	5,344	3,890	30,846	17.8
	간이	2,900	2,900	-	11	11	-	-	-	2,889	1.7
1999	계	316,566	196,295	120,271	106,559	5,948	100,878	79,386	21,492	210,007	100.0
	법인	262,595	142,324	120,271	94,745	3,495	91,250	73,930	17,320	167,850	79.9
	개인일반	50,233	50,233	-	11,791	2,430	9,628	5,456	4,172	38,442	18.3
	간이	3,256	3,256	-	13	13	-	-	-	3,243	1.5
	특례	482	482	-	10	10	-	-	-	472	0.2

주: 1. 납부, 환급, 실세수액은 신고 준임.
 2. 수입분은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1983.1	계	102,431	83,821	18,610	772,437	332,228	440,209	77,412	28,166	49,246
	법인	7,827	4,140	2,687	291,683	80,338	211,345	31,654	8,806	22,848
	개인일반	56,790	42,762	14,028	370,023	148,450	221,573	43,445	17,220	26,225
	특례	37,814	36,919	895	110,731	103,440	7,291	2,313	2,140	173
1983.2	계	94,562	70,829	23,733	999,805	222,516	777,289	98,398	18,878	79,520
	법인	9,231	3,465	5,766	546,909	55,736	491,173	54,833	6,493	48,340
	개인일반	54,635	36,601	17,034	368,936	94,156	274,780	41,702	10,790	30,912
	특례	30,696	29,763	933	83,960	72,624	11,336	1,863	1,595	268
1984.1	계	101,847	87,642	14,205	788,404	328,642	459,762	78,191	29,316	48,875
	법인	6,197	3,327	2,870	357,918	104,959	252,959	37,725	11,968	25,757
	개인일반	55,791	44,783	11,008	336,769	136,863	199,906	38,391	15,431	22,960
	특례	39,859	39,532	327	93,717	86,820	6,897	2,075	1,917	158
1984.2	계	72,181	66,774	5,407	487,163	302,752	184,411	53,834	35,542	18,292
	법인	5,089	4,243	846	205,715	69,224	136,491	26,692	14,234	12,458
	개인일반	39,128	34,621	4,507	218,167	172,214	45,953	25,696	19,913	5,783
	특례	27,964	27,910	54	63,281	61,314	1,967	1,446	1,395	51
1985.1	계	69,747	64,390	5,357	500,346	323,432	176,914	51,394	31,735	19,659
	법인	5,009	3,685	1,324	193,124	87,922	105,202	21,923	10,655	11,268
	개인일반	42,258	38,338	3,920	234,971	166,078	68,893	27,995	19,662	8,333
	특례	22,480	22,367	113	72,251	69,432	2,819	1,486	1,418	68
1985.2	계	58,361	51,131	7,230	547,804	331,324	216,480	58,478	33,783	24,695
	법인	6,065	4,556	1,509	235,055	115,999	119,056	27,165	13,740	13,425
	개인일반	36,804	31,135	5,669	257,456	162,866	94,590	30,259	19,061	11,198
	특례	15,492	15,440	52	55,293	52,459	2,834	1,054	982	72
1986.1	계	355,444	349,496	5,948	680,189	442,923	237,266	148,414	120,675	27,739
	법인	10,563	9,172	1,391	184,941	62,160	122,781	39,796	24,940	14,856
	개인일반	147,056	142,932	4,124	417,403	308,396	109,007	99,689	86,930	12,759
	특례	197,825	197,392	433	77,845	72,367	5,478	8,929	8,805	124
1986.2	계	328,615	322,628	5,987	640,845	325,482	315,363	142,198	107,472	34,726
	법인	10,322	9,117	1,205	248,042	83,839	164,203	42,774	24,492	18,282
	개인일반	123,907	119,479	4,428	334,718	190,312	144,406	91,790	75,520	16,270
	특례	194,392	194,038	354	58,085	51,331	6,754	7,634	7,460	174
1987.1	계	364,655	358,753	5,902	963,794	599,339	364,455	189,777	149,806	39,971
	법인	11,883	10,611	1,272	305,116	116,687	188,429	55,658	34,755	20,903
	개인일반	327,003	325,168	1,835	2,772,269	1,960,404	811,865	778,269	722,068	56,201
	특례	189,370	189,080	290	131,698	120,866	10,832	9,459	9,129	330
1987.2	계	342,039	340,185	1,854	495,869	312,882	182,987	155,610	135,259	20,351
	법인	11,040	10,620	420	130,749	23,224	107,525	46,899	34,648	12,251
	개인일반	140,258	138,911	1,347	311,516	238,532	72,984	101,360	93,320	8,040
	특례	190,741	190,654	87	53,604	51,126	2,478	7,351	7,291	60
1988.1	계	377,595	375,249	2,346	888,569	657,499	231,070	204,526	175,505	29,021
	법인	10,391	9,694	697	342,854	182,650	160,204	63,311	44,365	18,946
	개인일반	158,376	156,734	1,642	471,167	401,215	69,952	132,599	122,545	10,054
	특례	208,828	208,821	7	74,548	73,634	914	8,616	8,595	21
1988.2	계	371,702	368,361	3,341	811,028	499,438	311,590	199,799	166,016	33,783
	법인	11,138	10,307	831	265,609	130,279	135,330	60,688	42,233	18,455
	개인일반	143,931	141,740	2,191	478,303	311,572	166,731	129,945	114,828	15,117
	특례	216,633	216,314	319	67,116	57,587	9,529	9,166	8,955	211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백만원)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1989.1	계	426,843	423,712	3,131	1,081,729	696,211	385,518	237,405	203,882	33,523
	법인	13,271	12,586	685	440,826	255,781	185,045	75,007	56,142	18,865
	개인일반	178,319	176,347	1,972	533,298	343,179	190,119	152,384	137,964	14,420
	특례	235,253	234,779	474	97,605	87,251	10,354	10,014	9,776	238
1989.2	계	439,287	436,366	2,921	918,215	462,157	456,058	213,241	175,024	38,217
	법인	11,997	11,347	650	326,022	115,458	210,564	56,195	36,962	19,233
	개인일반	157,304	155,586	1,718	521,368	292,963	228,405	146,696	128,159	18,537
	특례	269,986	269,433	553	70,825	53,736	17,089	10,350	9,903	447
1990.1	계	453,308	451,139	2,169	1,060,990	620,977	440,013	265,000	227,723	37,277
	법인	12,955	12,497	458	389,245	185,911	203,334	71,503	55,154	16,349
	개인일반	166,020	164,862	1,158	574,055	357,798	216,257	181,141	160,691	20,450
	특례	274,383	273,830	553	97,690	77,268	20,422	12,356	11,878	478
1990.2	계	345,362	342,954	2,408	1,007,145	591,098	416,047	257,259	221,204	36,055
	법인	11,988	11,506	482	327,525	160,055	167,470	68,846	52,795	16,051
	개인일반	146,672	145,521	1,151	562,447	339,454	222,993	176,442	157,005	19,437
	특례	187,152	186,377	775	117,173	91,589	25,584	11,971	11,404	567
1991.1	계	387,190	384,878	2,312	1,079,471	610,015	469,456	247,020	208,066	38,954
	법인	11,199	10,893	306	340,418	164,878	175,540	85,973	69,283	16,690
	개인일반	151,165	150,202	963	551,564	322,273	229,291	196,310	175,385	20,925
	특례	224,826	223,783	1,043	187,489	122,864	64,625	14,737	13,398	1,339
1991.2	계	425,659	421,915	3,744	1,289,410	709,087	580,323	364,213	311,261	52,952
	법인	14,232	13,522	710	474,226	213,871	260,355	122,690	98,367	24,323
	개인일반	158,865	156,867	1,998	659,383	389,545	269,838	227,244	199,736	27,508
	특례	252,562	251,526	1,036	155,801	105,671	50,130	14,279	13,158	1,121
1992.1	계	473,355	470,136	3,219	1,574,512	1,032,727	541,785	497,406	447,623	49,783
	법인	15,943	15,441	502	505,964	277,711	228,253	179,633	157,203	22,430
	개인일반	182,774	181,245	1,529	796,707	545,834	250,873	299,273	273,697	25,576
	특례	274,638	273,450	1,188	271,841	209,182	62,659	18,500	16,723	1,777
1992.2	계	544,072	540,035	4,037	2,306,783	1,496,645	810,138	545,169	491,072	54,097
	법인	17,203	16,549	654	1,176,570	729,026	447,544	202,939	178,938	24,001
	개인일반	174,115	171,852	2,263	812,535	506,604	305,931	318,936	290,090	28,846
	특례	352,754	351,634	1,120	317,678	261,015	56,663	23,294	22,044	1,250
1993.1	계	599,783	593,258	6,525	3,459,653	2,430,766	1,028,887	616,781	535,806	80,975
	법인	19,464	18,781	683	1,657,542	1,090,500	567,042	248,932	202,461	46,471
	개인일반	208,527	206,074	2,453	1,190,586	852,074	338,512	339,742	307,976	31,766
	특례	371,792	368,403	3,389	672,525	549,192	123,333	28,152	25,369	2,783
1993.2	계	631,059	621,160	9,899	3,175,528	1,702,686	1,472,842	668,393	524,760	143,633
	법인	22,508	20,864	1,644	1,168,813	445,654	723,159	266,743	194,914	71,829
	개인일반	229,578	223,861	5,717	1,466,240	813,869	652,371	374,659	305,042	69,617
	특례	378,973	376,435	2,538	540,975	443,663	97,312	26,991	24,804	2,187
1994.1	계	510,215	502,837	7,387	2,894,434	1,364,202	1,530,232	636,701	487,061	149,640
	법인	21,750	20,179	1,571	1,290,673	454,443	836,230	272,924	193,351	79,573
	개인일반	186,793	181,580	5,213	1,206,547	553,285	653,262	339,104	269,937	69,167
	특례	301,672	301,078	594	397,214	356,474	40,740	24,673	23,773	900
1994.2	계	525,952	518,594	7,358	3,171,147	1,408,485	1,762,662	669,335	512,942	156,393
	법인	24,071	22,563	1,508	1,359,441	424,410	935,031	277,332	203,442	73,890
	개인일반	211,736	206,148	5,588	1,351,112	538,097	813,015	362,816	280,650	82,166
	특례	290,145	289,883	262	460,594	445,978	14,616	29,187	28,850	337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백만원)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1995.1	계	485,897	481,642	4,255	3,981,436	2,520,895	1,460,541	899,521	774,865	124,656
	법인	25,565	24,613	952	1,285,817	585,954	699,863	352,723	299,048	53,675
	개인일반	223,193	220,166	3,027	1,950,332	1,229,235	721,097	513,424	443,318	70,106
	특례	237,139	236,863	276	745,287	705,706	39,581	33,374	32,499	875
1995.2	계	518,052	513,438	4,614	3,970,448	2,351,898	1,618,550	956,055	821,763	134,292
	법인	32,107	31,166	941	1,552,000	693,584	858,416	406,336	341,124	65,212
	개인일반	313,813	310,507	3,306	1,677,056	952,437	724,619	525,852	457,591	68,261
	특례	172,132	171,765	367	741,392	705,877	35,515	23,867	23,048	819
1996.1	계	403,217	400,903	2,314	4,308,982	3,175,374	1,133,608	1,113,737	1,021,984	91,753
	법인	35,613	34,900	713	1,671,172	1,005,235	665,937	476,222	425,964	50,258
	개인일반	307,605	306,140	1,465	1,783,124	1,328,540	454,584	605,605	564,392	41,213
	특례	59,999	59,863	136	854,686	841,599	13,087	31,910	31,628	282
1996.2	계	408,991	402,621	6,370	4,689,364	2,728,080	1,961,284	1,007,490	856,396	151,094
	법인	33,638	31,111	2,527	1,630,461	568,394	1,062,067	429,638	348,907	80,731
	개인일반	296,274	292,861	3,453	2,401,873	1,541,192	860,681	557,108	487,603	69,505
	특례	79,079	78,649	430	657,030	618,640	38,390	20,744	19,886	858
1997.1	계	555,760	550,997	4,763	5,282,885	3,175,069	2,107,816	1,333,836	1,165,848	167,988
	법인	46,344	44,825	1,519	2,284,078	996,910	1,287,168	622,989	522,976	100,013
	개인일반	336,033	333,324	2,709	2,135,124	1,335,149	779,975	659,148	592,583	66,565
	간이과세	65,203	64,957	246	160,835	145,632	15,203	25,115	24,330	785
1997.2	계	542,581	537,361	5,220	4,842,795	2,992,114	1,850,681	1,325,783	1,169,428	156,355
	법인	54,693	51,598	3,095	2,162,879	953,099	1,209,780	705,825	600,139	105,686
	개인일반	297,596	295,870	1,726	1,721,886	1,110,197	611,689	577,071	527,329	49,742
	간이과세	103,683	103,478	205	185,263	169,090	16,173	21,866	21,208	658
1998.1	계	588,300	584,683	3,617	7,483,393	4,955,473	2,527,920	1,981,053	1,802,030	179,023
	법인	65,848	64,438	1,410	4,223,362	2,580,025	1,643,337	1,134,902	1,013,780	121,122
	개인일반	338,150	336,369	1,781	2,349,324	1,515,064	834,260	797,734	741,980	55,754
	간이과세	120,133	119,819	314	386,280	347,406	38,874	31,780	29,878	1,902
1998.2	계	64,169	64,057	112	524,427	512,978	11,449	16,637	16,392	245
	법인	630,897	625,724	5,173	9,283,957	5,638,407	3,645,550	1,879,272	1,631,927	247,345
	개인일반	70,817	67,816	3,001	4,838,428	2,042,772	2,795,656	1,029,698	840,244	189,454
	간이과세	163,402	159,062	4,340	526,980	361,786	165,194	124,660	105,922	18,738
1999.1	계	165,910	165,665	245	854,390	824,342	30,048	52,967	51,460	1,507
	특례	67,167	67,075	92	818,870	810,889	7,981	18,338	18,155	183
	법인	678,814	673,758	5,056	11,318,537	9,240,185	2,078,352	1,222,137	965,421	256,716
	개인일반	84,281	82,338	1,943	4,394,565	3,082,089	1,312,476	380,255	203,068	177,187
1999.2	계	336,485	334,188	2,297	5,365,701	4,665,434	700,267	774,288	697,156	77,132
	간이과세	164,810	164,401	409	868,395	822,156	46,239	51,048	49,081	1,967
	특례	93,238	92,831	407	689,876	670,506	19,370	16,546	16,116	430
	법인	694,705	690,565	4,140	10,088,283	8,155,546	1,932,737	842,265	630,182	212,083
1999.2	계	86,258	84,103	2,155	6,751,731	5,274,926	1,476,805	182,228	21,137	161,091
	개인일반	315,134	313,644	1,490	1,770,072	1,352,054	418,018	596,421	547,012	49,409
	간이과세	175,328	175,045	283	870,780	844,635	26,145	48,000	46,743	1,257
	특례	117,985	117,773	212	695,700	683,931	11,769	15,616	15,290	326

주: 특례(과세특례)인원에는소액부징수자가제외되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5. 업태별 부가가치율

(단위: %)

과세기간	계	농수임, 어업	광업	제조	전기,가스, 수도	도매	소매	부동산 매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	대리,중개,주선, 위탁,도급	기타
1983.1(7)	29.7	74.7	36.1	28.0	15.3	11.6	10.6	-	76.7	58.8	51.8	61.3	36.8	50.2	49.7
1983.2	30.0	67.4	35.0	26.7	20.3	11.5	7.9	-	69.3	56.3	47.4	62.6	7.7	54.4	48.7
1984.1	27.8	56.9	19.4	19.8	32.5	22.3	13.2	-	65.9	57.7	53.5	63.2	30.3	52.8	50.7
1984.2	29.1	69.0	37.6	20.4	32.0	25.0	13.4	-	64.9	56.4	49.7	59.7	8.6	55.0	45.9
1985.1	27.3	62.1	14.7	19.2	40.3	21.3	16.1	-	66.3	54.7	55.7	64.7	42.0	50.5	50.3
1985.2	29.3	56.8	43.8	22.6	36.1	22.7	14.5	42.4	61.8	54.2	37.2	60.1	31.1	50.1	47.7
1986.1	27.0	55.3	43.1	21.8	48.5	20.6	16.9	44.8	54.4	54.2	44.1	60.9	40.9	49.3	50.1
1986.2	28.4	50.2	45.7	22.5	51.1	22.4	15.5	5.9	57.9	52.5	21.4	59.7	22.3	53.8	45.8
1987.1	25.2	55.0	43.2	19.6	54.6	20.8	16.6	24.9	47.2	52.8	36.2	63.9	47.0	55.7	49.4
1987.2	24.4	44.8	42.7	17.3	49.3	21.9	15.7	21.9	51.6	48.5	16.4	63.6	26.3	50.4	44.4
1988.1	23.2	51.4	40.4	18.1	51.4	20.2	15.8	30.2	38.7	49.6	6.7	64.3	39.6	56.6	41.1
1988.2	25.8	35.6	41.2	21.4	51.4	20.4	14.5	31.4	47.9	49.1	22.1	62.8	25.7	50.9	44.8
1989.1	23.7	51.1	36.2	18.6	54.0	20.8	15.8	35.7	36.0	49.7	46.3	62.4	42.5	48.0	46.4
1989.2	24.8	33.1	37.8	19.8	39.0	22.1	14.5	22.2	42.9	48.6	44.6	61.0	23.0	44.6	43.1
1990.1	22.8	43.1	32.7	18.5	44.7	21.2	15.1	7.2	30.1	49.1	45.3	59.4	28.6	49.2	39.7
1990.2	23.4	21.6	26.7	18.9	28.8	21.7	13.7	-	41.9	50.0	44.3	56.5	11.8	44.2	38.0
1991.1	21.3	38.0	31.1	16.7	31.6	20.6	13.6	-	27.8	41.0	52.8	61.7	18.4	45.5	37.2
1991.2	24.0	42.8	28.5	20.4	20.6	19.3	13.4	-	39.6	49.1	52.9	59.0	7.2	42.3	36.6
1992.1	23.5	48.9	12.9	20.9	16.0	20.1	12.5	-	32.3	49.2	60.6	60.8	23.2	46.5	35.3
1992.2	25.8	50.0	30.6	22.4	10.8	20.2	6.8	-	41.6	48.6	53.0	58.6	18.9	25.5	39.1
1993.1	24.9	23.2	9.3	20.9	18.8	19.5	14.3	-	32.7	47.6	54.1	60.3	31.7	36.1	40.1
1993.2	26.4	58.4	3.2	23.4	26.6	19.9	15.3	-	42.3	50.2	50.8	62.8	12.0	41.9	43.5
1994.1	24.3	28.1	11.2	21.7	30.4	19.7	16.2	13.1	30.4	54.8	59.0	60.0	25.2	49.0	42.3
1994.2	25.1	44.9	18.7	23.2	16.3	19.8	13.3	-	39.8	52.3	49.9	45.5	19.1	48.6	34.7
1995.1	22.6	25.8	19.3	19.0	21.6	19.2	13.5	-	32.7	54.3	49.4	59.3	29.5	47.7	39.1
1995.2	21.0	33.9	19.3	14.5	7.3	19.9	12.6	-	37.9	52.9	49.8	60.5	25.8	40.8	36.3
1996.1	22.4	55.1	15.4	19.4	14.7	18.7	13.9	-	31.2	54.6	47.6	59.1	33.5	39.5	36.5
1996.2	22.2	39.6	22.0	19.0	2.6	18.1	11.0	-	36.7	47.4	38.0	54.2	22.4	37.7	34.3
1997.1	22.0	39.8	4.4	20.4	-	18.3	14.2	-	32.5	45.7	35.6	58.7	24.8	36.0	38.1
1997.2	24.9	50.3	19.7	23.9	0.3	18.0	12.0	-	36.6	46.1	33.7	58.0	15.8	38.3	37.7
1998.1	28.5	59.0	-	29.6	14.6	16.2	17.8	-	39.4	37.4	54.0	62.7	36.9	45.3	32.6
1998.2	28.2	42.0	35.8	28.3	13.1	20.2	18.1	-	37.7	49.7	52.6	60.5	40.7	45.7	30.7
1999.1	23.2	33.2	-	25.5	19.8	7.5	17.9	-	34.6	49.3	60.7	54.4	-	41.5	44.4
1999.2	26.9	29.7	25.5	24.0	-	21.1	14.0	18.0	42.1	48.6	56.4	57.0	31.8	48.4	39.8

주: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